

1924년 6월

국민협회 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11,777명

#### 제4회 건백서(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정부는 신속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겉으로는 찬연한 문화가 빛날지라도 속으로는 들끓는 불평이 점차 커져나감을 본다. 이것이 현재 조선의 상태이다. 세상은 태평하지만 백성은 평안하지 못하다. 문명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사상이 혼미하다. 지금 바로잡을 방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화근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우국지사로서 긴 한숨이 나온다.

뒤돌아보건대 일한병합이 이루어진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황풍(皇風)이 전도(全道)를 적셔 산하가 되고 백성을 일구어 성대(聖代)의 은택이 되었다. 문명은 날로 진보되었고, 민지(民智) 또한 날로 계발되었다. 이 사실 앞에 과연 누가 예전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칭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2천만 민중의 불평은 고조되었고, 사상 또한 혼탁하다. 이는 위정자가 가장 심려할 부분으로 그 원인을 탐구하고 폐단을 없애는 것이 지금 조선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조선은 결코 예전의 조선이 아니다. 오늘의 조선 또한 영구히 오늘의 조선이 아닐 것이다. 아주 빨리 세상과 더불어 진보하여 모름지기 역사도 그 끝을 모를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처하는 방책이 여전히 상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득책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땅히 민심의 추이를 잘 살피고 이에 적응할 시설을 갖추어 반도 백년의 치평(治平)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양 민족 공통의 행복을 위해 일한병합이 이루어진 것은 15년 전의 사실이다. 지금 또 다시 그 근본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이 되어 그 소요<sup>38)</sup>를 발발시켜 수치를 천하에 드러냈는데도 여전히 양민족 공통의 행복을 위해 행해진 것이 합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소위 신정을 펼친 지 벌써 5년,

38) 3·1운동을 뜻함.

일시동인의 대조(大詔)를 받들어 똑같이 폐하의 신민으로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권리의 신장은 허용되지 않아 조선 민중의 앞날은 더욱 암담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즉 현재 사상이 동요하여 그 끝을 모르는 것이 화근이다. 2천만 민중이 이구동성으로 절규하면서 요구하는 바는 실로 완전한 국민으로서의 필수조건인 다름 아닌 국정 참여의 권리이다. 똑같은 폐하의 적자로서 삶을 일본제국과 더불어 향유하면서 유독 조선의 민중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망국의 유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 민중은 종종 원망에 싸여 쓸데없이 분개하기 십상이다. 이 굴욕을 오래도록 그냥 두는 것은 국책상 결코 좋지 않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러한 굴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제국신민으로서의 명실(名實)을 구비하려는 2천만 민중의 폐부에서 나온 숙성의 절규이다. 오히려 비장한 느낌이 든다고 말해야 한다.

현대의 국가조직은 민족적 국가가 아니라 국민적 국가이다. 조선 민중은 이를 이미 숙지하고 있다. 국민 관념의 고조에 따라 스스로 국가의 구성분자라는 자각이 차츰 농후해지면서 조선 민중은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다. 일시동인은 이미 폐하의 대조임에 분명하다. 구구한 민도의 차이를 논해서는 안 된다. 조선 민중이 열망하는 바 또한 폐하의 마음을 응당 받들기 위함에 다름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정세를 우려하고 이를 구치(救治)할 수 있는 길은 조선에 국정 참여의 권리를 주는 것 이외에 없다고 생각하여 1920년 제국의회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망하는 건을 청원하고 세 번 만에 중의원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더욱 분투하여 그 실시 촉진에 힘을 기울여 연간 세 번에 걸쳐 정부에 건백했고, 오늘 또 다시 네 번째 건백서를 각하께 제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깊이 생각건대 조선 통치라는 것은 아주 지난한 일로 하루아침에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당국이 법령을 통해 옛 성민(聖民)을 다스렸던 훌륭한 방법을 참작하여 실행한다면 굳이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 2천만 민중의 앞날에 한줄기 광명을 비추어 그 나아갈 바를 제시하면 민심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명료하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의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참정권 부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논하는 것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참정의 방법은 자치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지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책이 나뉠 것이다. 이미 합병의 이상인 양국일가의 실질을 거두는 데는 내지연장주의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합병 이후 15년간 실로 이 주의에 일관해 온 것은 내외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참정의 방법 또한 제국의회에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새삼스럽

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제44회 제국의회에서 중의원은 만장일치로 우리의 바라는 바를 채택하였다.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은 다만 시기의 문제만이 남았다. 이후 이미 4년이 지나 조선의 문물은 크게 변했고, 민도 또한 현저히 향상되어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참정권 요구의 목소리가 온 반도에 널리 퍼졌지만, 아직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것에 점차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오늘날과 같이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하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에 따라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혼란스러운 민심의 안정에 바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지금 내지에서는 보통선거의 시기가 이미 무르익었다. 각하의 영명한 판단이 이를 해결해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조선 민중의 바라는 바를 달성시키는 것이 가장 공명한 시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각하의 재단(裁斷)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불행하게도 곧바로 이의 실현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예정의 시기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 또한 그 공약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권리의 행사를 위한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실시 이전까지 잠정적 제도로서 조선에 특수한 의회를 설치하여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혹은 작위를 받은 의원의 호선이나 칙선(勅選) 제도를 응용하여 먼저 귀족원에 조선인을 참여시켜도 좋다. 특별선거구역을 정하여 문화 정도가 높은 도시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참정권 부여의 표적을 내걸어 미로에 빠진 조선의 민중에게 그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이라도 모두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잠정적 준비제도로써만 시행되어야 이것이 처음부터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각하는 내각수반으로서 조선의 현상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각하의 너그럽고 인자한 높은 덕을 신뢰하여 신속히 바라는 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래 자기 자신이나 가문을 위해 말하지 않는다. 이는 2천만 민중의 위에 있는 제국의 건전한 발전에 밑바탕이 되자는 뜻에서 나왔으니, 부디 각하가 이를 잘 헤아려 조선 민중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925년 2월

국민협회 회장 중4위 훈3등 김명준(金明濬) 외 회원 일동

## 제5회 건백서(와카스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내각)

정부는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일한병합의 대정신은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조선의 강복(康福)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조선 통치의 근본의의는 조선 민중의 지식을 계발하고 문화를 향상시켜 정치적 사회적인 대우를 일본인과 동일한 지위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묘모(廟謨)의 기존방침으로 영구히 변하지 않는 바이다.

합병 이후 17년이 지난 오늘의 조선은 총독정치의 혜택으로 민지(民智)가 날로 개화되고 국부(國富)는 매년 일신하고 있다. 그 모습은 1910년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진보하였다. 하지만 조선 민중에게는 아직 국정 참여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민중의 국가에 대한 관념은 스스로 박약하다. 물질적으로는 문명이 찬연(燦然)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하고 언동이 지나치게 과격할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려할 일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보통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 30만 일본인에 대해서도 조선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실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시일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네 번에 걸쳐 정부에 건백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선의 정세에 비추어 심히 유감이다.

그 어떤 국가를 불문하고 내정(內政)의 어려운 점은 반드시 동일 국민의 대우를 차별하는 것에서 배태된다. 이는 역사가 알려주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즉시 조선 민중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기상조라는 구실로 조선 민중의 열망을 거부한다면, 시대사조의 악화에 물든 민심은 끝내 수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여 여기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건백하는 까닭이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조선의 정세를 잘 살피 우리의 건백을 받아주시길 바란다.

1926년 3월 3일

국민협회 회장 정4위 훈3등 신석린(申錫麟) 외 회원 일동

## 제6회 건백서(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내각)

정부는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일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입헌국민으로서 권리의 행사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무를 부담하는 의무의 수행이다. 우리 제국의 헌법 발표 이후 38년이 지난 오늘날 이미 보통선거법이 시행된 것은 시세의 진운(進運)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 입헌제국에 비해 오히려 급속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 모두 경하하는 바이다. 그런데 유독 조선에 거주하는 신민에 한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경하가 반감된다. 이는 조선 거주 신민의 불행일 뿐 아니라, 방가(邦家)를 위해서도 극히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일한병합의 대정신은 조선 민중을 폐하 밑에 직접 두고 일시동인의 강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조선을 식민지로서 통치하거나 조선 민중을 식민지 백성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합의 조서(詔書)와 관계개혁의 조서에 나타나있다. 하지만 조선 민중의 일부에는 지금도 망국의 유민인 것처럼 자처하여 반국가사상을 품은 자 없지 않다. 이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한 세상의 국민 가운데 의구심을 품어 충성심이 결여된 자가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제국의 백년대계와 조선 민중의 영구한 존락(存樂)을 생각하여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제국의회에 세 번 청원하였고, 중의원이 채택한 이후에는 신속한 실행을 바라기 때문에 내각에 네 번에 걸쳐 건백하였다. 각하께 건백한 것도 두 번째로 그동안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도리를 다하여 사정을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될 바가 없다.

각하가 제51회 제국의회에서 “조선과 대만의 인민이 입법심의권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문화의 진보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오늘날 조선과 대만의 문화가 일본과 같이 발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기가 도달하기까지 입법권의 부여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제국의회 이외에 특수한 의회를 창설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시기상조이지만 조속히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명한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실로 감격해 마지않는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사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 특히 보통선거법을 실시하면 참정권을 획득하는 자는 사실상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이

유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요컨대 조선에 거주하는 민중에게 참정권의 부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조선의 문화 정도가 아직도 일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동등한 정도의 문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가. 조선 민중은 오늘날 조선의 문화를 1909년 무렵의 일본과 비교하면 결코 손색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바이다. 만약 조선의 문화가 현재의 일본과 동등해진 다음에 비로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면, 조선 민중의 앞날은 다만 미로에서 방황할 뿐이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에서 배태되는 사상은 지금 이상으로 악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조선의 정세를 잘 살펴 우리의 건백을 받아주시길 바란다.

1927년 2월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회원 일동

비고) 본회가 매년 실시한 참정권 요구운동을 일반 민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선 13도에서 선출한 도 평의회원의 찬동 연서로 건백하였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경기 유병필(劉秉珣) △충북 민영은(閔泳殷) △충남 김갑순(金甲淳) △경북 서병조(徐丙朝) △경남 김기태(金琪泰) △평북 최석하(崔錫夏) △평남 강병옥(康秉鉦) △황해 김홍봉(金弘鳳) △전북 이해만(李海晩) △전남 오형남(吳亨南) △함북 김기덕(金基德) △함남 유병의(劉柄義) △강원 고운하(高運河)

### 제7회 건백서(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일한병합 이후 19년간 조선 통치는 메이지(明治) 대제(大帝)의 성조(聖詔)를 받들어 조선 민중의 강복을 증진하고자 내지연장주의하에서 이루어졌다. 행정시설은 점차 효과를 거두어 일신하였고, 그 모습은 병합 이전에 비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내외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조선 민중의 일부는 여전히 병합의 대정신을 오해하여 스스로를 망국의 유민으로 간주하여 제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이 결여된 자 적지 않다. 이는 요컨대 조선을 아직 특수한 법역(法域)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의심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조선 민중을 국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병합의 대의이다.

선제(先帝) 폐하의 일시동인의 성조를 봉행하는 방법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양책(良策) 또한 이것 이외에는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제국의회에 세 번에 걸쳐 청원하고 정부에 여섯 번에 걸쳐 건백하였지만,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각하께 건백하기에 이르렀다. 폐하의 천조(踐祚) 이후 조견식(朝見式)의 칙어 중에 “짐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널리 일시동인을 베풀고 영원히 사해동포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친숙해져 일시동인의 성은 아래 화육(化育)하여 공존공영하고 인류애로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금년에는 보통선거법이 중의원의원 총선거를 통해 실시되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수만의 조선 민중은 선거 및 피선거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에 거주하는 자는 조선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제국신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다. 조선 민중에 대한 균등한 참정권의 부여를 열망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각하께 다시 건백하는 바이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우리의 미애(微哀)를 잘 살펴 건백을 받아주시길 바란다.

1928년 4월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회원 일동

비고) 각 도 평의회원의 연서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 조병렬(趙炳烈) △충북 민영은(閔泳殷) △충남 홍재흥(洪在興) △전북 정병정(鄭炳正) △전남 오헌창(吳憲昌) △경북 서병조(徐丙朝) △경남 노영어(盧泳魚) △황해 정건유(鄭健裕) △평남 김기정(金基正) △평북 최석하(崔錫夏) △강원 이근우(李根宇) △함남 김하섭(金夏涉) △함북 이흥재(李興載)

## 제8회 건백서(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

정부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일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입헌국민으로서 공권의 행사이자 책무의 수행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보통선거법의 실시에 따라 수만 명에 달하는 일본 거주 조선인 신민에게는 중의원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일본인 신민과 완전히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조선 거주 제국신민은 헌법 유효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분배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의 영예를 거세당하여 2천만 대중의 불행이 이보다 극심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제국 백년의 긴 계획과 조선 민중의 영구한 행복을 생각하여 온몸을 바쳐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세 번에 걸쳐 청원하고, 마지막에는 피의 희생을 지불하여 드디어 제44회 제국의회에 채택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후 10여 년의 긴 시간에 걸쳐 도리를 다하여 사정을 말하고 정부에 전후 여덟 차례에 걸쳐 건백하였다. 각하께만 건백한 것은 두 번째로 지금은 더 이상 아뢴 바 없다.

요컨대 조선 거주 민중에게 참정권의 부여를 주저하는 까닭은 조선의 문화 정도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의 문화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정참여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반대로 조선의 문화수준이 일본과 동일 수준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사물에 반대의 진리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조선의 시국을 잘 살피 우리의 건의를 곧바로 받아주시길 바란다.

1929년 2월 18일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회원 일동

## 제9회 건백서(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내각)

정부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 이유

일한병합이 이루어진 지 벌써 22년, 관제개혁의 성조(聖詔)가 내린 지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반 제도의 개선에 따른 문물의 발달과 민도의 향상은 실로 놀랄 만하다. 금년 4월에는 새로이 자체제도가 시행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우리 2천만 신민 모두는 정부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지방자치의 제도가 필히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전제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리가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조선에 시행되기를 요망한 것은 192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청원을 제출하였고 다행히 제44회 제국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각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그 실시를 아홉 번에 걸쳐 건백하였다. 민도의 향상에 따른 자치제도의 시행이 제국의회의 채택에 의할진대 아직도 여전히 그 실행 기일을 성명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연유인가. 2천만 일시동인의 적자가 쓸데없이 초조민절(焦燥悶絕)한 나머지 자포자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창대용운(昌代隆運)을 위해 장탄대식(長歎大息)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지 거주 조선인 신민은 중의원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인 부인에게는 시정촌(市町村)의 공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있는 조선과 일본 남자가 참정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의 망거(妄擧)가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회기 제국의회에서는 보통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선의 시국을 잘 살펴 우리의 건언을 곧바로 받아주시길 바란다.

1931년

국민협회장 송중헌(宋鍾憲) 외 회원 일동  
내각총리대신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각하

비고) 1930년 봄 제국의회는 민정당(民政黨) 내각에 의해 해산되었다. 총선거 이후 열린 임시제국의회는 회기가 짧아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백서는 그 제출이 중지되었다. 본회는 금년 2월 26일 제9회 건백서를 직접 하마구치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였다.

### (3) 진정운동

본회의 참정권 요구청원이 제44회 제국의회의 중의원에서 채택된 이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에 여덟 번에 걸쳐 그 실시를 건백하였지만, 정부는 단지 '시

기상조'라는 이유로 실시를 주저하였고, 중앙정계도 이 문제를 무심히 내버려두어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도 제52회 제국의회에서 처음으로 중의원의원 다기 구메지로(多木兼次郎) 씨로부터 조선에 참정권 부여의 청원이 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가 점차 중앙의 정계를 자극하는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회는 한층 이 기운을 촉성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종전대로 내각에 건백하는 한편, 중의원 의장 및 정우회와 민정당 양 당 총재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 상세한 진정문을 보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은  
정우회(政友會) 총재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각하께 상서한다**

생각건대 일한병합의 대정신은 분립된 양국을 하나가 되게 하고 7천만 신민과 4만 3천 방리(方里)의 강토를 포괄하여 신대일본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다. 1919년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에 따라 일시동인의 조서를 받들어 당시 내각총리대신 고(故) 하라 다카시(原敬) 씨의 내지연장주의의 성명한 것은 일한병합의 대정신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폐하의 적자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조선은 특수 지역(治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에 거주하는 신민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 국민으로서 불구자가 되었다. 이는 조선에 거주하는 신민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일반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입헌정치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우리는 국가 백년 대계상 결코 득책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병합 이후 당국의 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민도의 진보와 문화의 향상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조선인 중에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불평을 품어 사상이 악화한 자도 있다. 우리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것이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을 올리는 첩경이자 민심수습의 양책이라는 믿음으로, 1920년 1월 처음으로 중의원에 청원하고 이후 제44회 제국의회에도 제출하였다. 당시 회장이었던 민원식은 참정권 획득운동으로 흉한의 칼에 찔려 순사(殉死)하였다. 민원식의 순사는 대의사(代議士) 의원의 폭넓은 동정을 얻어 중의원에서는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지만,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우리는 매년 내각에 건백서를 제출하여 그 실시를 요망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2천만 조선인의 의구심을 없애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참정권

을 부여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 참정권을 부여하면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관념이 용출(湧出)될 것이다. 일본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고 부인의 공민권을 인정 한 것은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입헌정치의 요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에 거주하는 신민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 각하게 건의하게 되었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조선의 민정을 잘 살펴 당의(黨議)로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제국의회에 건의하여 정부가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29년 3월 14일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회원 일동

정우회 총재 남작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각하

민정당 총재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각하

## 5. 보선(普選)실시 축하회

1928년 2월 20일은 보통선거법의 시행 이후, 총선거가 첫 번째로 실시된 투표일이다. 본회는 다년간 참정권획득운동에 종사해온 관계로 이 날을 기념하여 내지 거주 조선인 유권자 1만여 명의 권리행사를 축하하고자 당일 오전 11시 20분 본 회관(서대문정 2정 목)에서 축하회를 개최하고, 각 방면의 관민 유지를 초청하여 조출한 연회를 열었다. 회장 대리로 총무 이병렬(李炳烈)이 일어나 개회사를 읽은 다음, 내빈으로 갑자구락부원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씨의 축사와 경성부협의회원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씨의 선창으로 양 폐하 및 국민협회 만세를 삼창하였다. 마지막으로 본회 총무 조병상(曹秉相)의 선창으로 대일본제국 만세를 삼창하고 성황리에 축하회를 끝마쳤다.

### 개회사

각하 및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제1회 보통선거법의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일본 거주 1만여 명의 조선인 유권자가 일본인과 동일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협회는 그 본래의 사명에 따라 이에 축하를 표하고자 이처럼 허름한 회관을 축하회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 걸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왕림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원 일동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생각해보면 본회 설립 당시 회장이셨던 고 민원식 군은 조선에 있는 2천만 민중의 권리신장을 위해 국회에 세 번에 걸쳐 청원하다가, 갑작스럽게 지난 1921년 2월 15일 애석하게도 도쿄스테이션 호텔에서 커다란 사명을 품고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 여기에서 일부 조선인의 참정권 행사자를 위한 축하회를 열게 된 것은 운명을 달리한 고 민원식 군의 영령에 약간의 위안이 될 것 같아 감개무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협회가 오늘 축하회를 거행한 것에 8천만 제국신민의 현실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얼마나 기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2천만 동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만여 명의 조선인 유권자가 비로소 의의 있는 한 표를 국가민생을 위해 투표한다는 것은 조선인으로서의 우리에게 더 없는 국민적 영예입니다. 바라는 바는 국가사회를 위해 최고의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조선 땅에서 일본과 똑같이 국정에 참여할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개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28년 2월 20일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씨의 축사 요지

(전략) 이번 선거법에 따라 획득한 일본 거주 조선인 동포의 참정권은 멀지 않아 조선에 선거법을 시행하는 전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에는 중선거구 때문에 1만여 명의 유권자가 있어도 1명의 대표자도 입법부에 보내기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후략)

이에 앞서 본회에서는 1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일에 즈음하여 한 표의 기권도 없이

귀중한 권리를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서간을 각 유권자에게 보내고자 약 2만 매의 인쇄물을 조선인이 거주하는 각 현청(縣廳) 및 상애회(相愛會) 본부와 지부에 송부하고 그 배달을 의뢰하여 만에 하나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도쿄 상애회 본부에서 인쇄물을 유권자 각위에게 배포 중, 도쿄의 사회주의단체원인 조선인 노동자와 충돌하여 상애회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 본회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당시 도쿄에 있던 본회 총무 이동우(李東雨)는 입원 중인 부상자를 위문하였다. 서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욱 용승(勇勝)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928년 2월 20일은 일본제국에 새로이 복속된 백성인, 조선인에게 정말로 기념할 만한 의의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대의정치에서 최선의 제도인 보통선거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고, 또 이번 기회에 일본 거주 조선인도 모두 국민으로서 최상의 권리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조선인은 비로소 일본제국민의 한 성원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제국의 헌정사는 특필할 만한 획기적인 광휘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에서 참정권 부여를 요망하여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여 우려하는 바가 많으나 지금도 촉진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정권이 일본에만 한정되어 아직도 조선에 시행되지 못하는 모순과 불합리를 느끼면서 한없이 원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참정권 획득과 행사는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머나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 공경하고 경건한 마음을 바칩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는 정말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공명정대한 권리 행사의 결과는 곧바로 우리 조선의 고유한 우수문명을 천하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동시에 나아가서는 조선인의 정치능력의 고저(高低)와 제국에 대한 충성의 유무를 의심하는 편벽과 오류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에 응하여 쾌히 투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성한 한 표를 던지는 2월 20일, 본회 본부에서 일본 거주 조선인참정권행사축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년에 걸친 절실한 요망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의 이번 권리행사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조속히 얻고자 하여도 쉽게 부여되지 않았던 이 귀중한 권리를 한 표의 기권도 없이 완전히 행사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928년 2월

## 6. 척식성 조선제외운동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척식성 신설 예산안이 본년 의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어 정부는 그 실시를 위해 척식성 관제안을 추밀원에 제출하고 자문 수속을 밟게 되었다. 관제안의 내용은 조선을 비롯해 대만, 사할린, 관동주, 남양군도에서의 사무 통괄 및 이식민의 지도 장려 등의 업무는 모두 척식대신의 관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은 형식상 부정할 수 없는 식민지가 되는데, 이는 명백히 일한병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본회는 이에 분연히 들고일어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중앙관계당국에 타전하고 나아가 진정서를 보내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단체와 연합하여 “조선을 척무성의 관할에 소속시켜 식민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병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정부요료에 전송함과 동시에, 별도로 척식성 조선제외동맹을 조직하여 국민협회, 동민회, 갑자구락부, 대정친목회, 교육협성회 등 5단체가 참가하여 반대운동의 기세를 올렸다. 또 각 단체로부터 진정위원을 선출하여 도쿄에 가기로 결정하여 김명준(金明濬), 박영철(朴榮喆), 조병상(曹秉相), 최덕(崔惠) 등 4명은 4월 하순 경성을 출발하여 도쿄로 향했다. 이들은 먼저 중앙조선협회를 비롯해 각 신문사, 내각, 추부(樞府), 각 정당 본부와 다수의 조선 명사를 역방하여 구체적으로 조선의 사정을 진술하였다. 또 진정서 수천 매를 각 방면에 배포하여 양해를 촉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의향을 물어보니 신설 성에서 조선을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차선책으로 5월 13일 다나카(田中) 수상과의 회견 석상에서 중앙조선협회 회장 사카타니(阪谷) 남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희망요건을 제시하였다.

1. 척식성의 명칭을 변경할 것.
2. 관제 내용 중 조선만은 다른 부문을 설정하여 취급하고 기타는 사무별로 할 것.
3. 관제 발표와 동시에 총리대신은 조선을 식민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

이에 대해 다나카 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1. 척식성의 설치에 조선의 권리와 이익을 내각에서 주장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의 실정을 비추어보아 만약 악영향이 있다면, 그 악감정을 없애는 것은 정치상 중대한 문제이므로 명칭 및 내용을 바꾸겠다.
2. 관제 발표와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요망처럼 조선은 식민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요지의 유고 혹은 훈시를 발표하겠다.
3. 조선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 만사를 모두 일본과 똑같이 하는 것임은 자타가 모두 논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조선총독부도 폐지하여 일본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나카 수상이 이처럼 철저히 언명했기 때문에 위원 일행도 만족의 뜻을 표하고 물러났다. 이번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목적을 관철했기 때문에 위원 일행은 5월 15일 도쿄를 출발하여 귀환하였다. 진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민협회 단독으로 제출한 진정문

##### 척식성관제 반대진정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대의는 조선 통치의 기초를 이루고, 내선융화의 실현이 양 민족의 대등적 결합에 있다는 것은 메이지(明治) 대제의 병합 조서 및 다이쇼(大正) 천황의 관제개혁의 조서에 공포된 성의(聖意)에 비추어 엄연한 사실이다. 이 정신에 의거하여 조선 거주 2천만 민중은 묘당(廟堂)의 계획을 신뢰하였다. 또 제국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까운 장래에 향유할 수 있다는 희망 아래 현 제도의 고통을 참아내고 모든 행복을 제2의 국민에게 부여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추밀원에 자문중인 척식성 관제안은 조선총독의 지위를 척식대신의 관리하에 두어 긴 역사와 오래된 문화를 지닌 조선인을 식민지 토착민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8천만 동포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일시동인의 국민에게 우열의 등차를 설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선융화의 계기를 근저로부터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조칙의 본의에 어긋나고 조선 통치에 관한 특별한 진념(軫念)을

물각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 관제가 실시된다면 조선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쳐 결국 수습할 수 없는 난국을 맞이할 염려가 있다. 각하의 현명함으로 다른 식민지와 그 취지를 달리하는 조선의 독특한 사정을 잘 살펴, 척식성 설치의 원안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시어 제국 백년의 대계를 확립하기를 바란다.

년 월 일  
국민협회장 김명준(金明濬)

내각총리대신  
추밀원 의장 귀하

▪ 각 단체연합으로 제출한 진정문

진정서

일시동인의 대의는 조선 통치의 기초를 이루고, 내선융화의 실현은 양 민족의 대등적 결합에 있다는 것은 메이지 대제와 한국 황제의 병합 조서, 다이쇼 천황의 관제개혁조서에 공포되었다. 황은의 우악(優渥)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병합의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준수하여 일본의 신동포로서의 의식과 신념에 살아가려는 우리 2천만민은 묘당(廟堂)의 계획을 신뢰하고 가까운 장래에 제국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잠시 현 제도에 복종하여 모든 행복을 제2의 국민에게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금 우리 조선은 곧 신설되는 척식성 관제에 따르면 위임관리인 남양군도와 동열에 놓여진다. 그들과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여 한번 고찰해보라. 단순히 이를 민족적 자부심만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원래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척식의 말뜻은 척지식산(拓植殖産)의 의미이고, 척식성의 신설은 오히려 정무의 간소화와 조선 민족의 복리증진에 편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혹 그럴지 모르겠다. 통치의大本(大本)이 이러하다면 무엇으로 신동포의 민심을 어루만질 것인가. 우리는 난류(亂流)의 지주(砥柱)가 될 것이다. 다년간 조선과 일본 결합을 위해 마음을 다 바친 자는 한탄하며 길게 한숨을 내설 것이다.

생각건대 동서양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국토와 민중을 병합하면서 식민지라는 이름을 붙인 선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영국의 아일랜드·이집트·인도, 미국의 쿠바·필리핀,



그리고 프랑스의 베트남이 그렇다. 이들은 지리적 관계와 역사적 요인이 모두 같지 않다. 문화의 계통, 언어, 습관, 풍속이 전혀 다르다. 다만 전쟁과 속임수로 나라와 백성을 뺏았다. 그런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동아의 맹주인 일본은 오히려 역으로 그들 백인 각국에 비해 병사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예의 속에서 평화로 이 양국 대등의 합방을 완성하여 세계의 특이한 대업을 제시하였다. 성풍혈우(腥風血雨)의 전쟁과 정복 피정복의 관계에 의하지 않은 인도적 합방은 국제적인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을 모방하여 조선에 식민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실로 옳지 않다. 예전 일이지만 식민지라는 용어는 누차 물의를 일으켜 일본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다. 경성일보 지면에 수차례에 걸쳐 조선을 식민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척식성 관제를 둘러싸고 미리 조선 상하의 의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이번과 같이 민심에 이상한 충동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잠시 음인(陰忍)하면서 피아제형(彼我弟兄)의 실적을 볼 수 있기를 요망(遙望)한다. 조선의 신동포는 대략 2천만을 헤아린다. 그 인심의 융합과 괴리는 일본제국의 국운의 융체(隆替)와 관련된 중대문제이다. 한 내각의 교체, 일당 일파의 소멸과 동일하게 논할 문제가 아니다. 의심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 의혹의 새로운 성을 설치하여 신동포의 반감을 조성하여 백년 국운의 화근을 만드는가.

우러러 메이지 대제의 병합 성조(聖詔)에 따라, 조선과 일본 결합의 본의에 비추어 신설 척식성으로부터 조선을 제외하여 2천만민의 찌푸린 눈을 열어주기를 각위에게 부디 청원한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만생을 밝히는 광영을 얻는다면, 내선융화의 계기를 만들고 8천만 창생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정성을 다하여 바라마지 않는다.

척식성조선제외동맹  
 국민협회  
 동민회  
 대정친목회  
 교육협성회  
 갑자구락부  
 위 대표  
 박영철(朴榮喆)  
 김명준(金明濬)

최덕(崔惠)  
조병상(曹秉相)

6월 10일에 발표된 척무성 관제의 내용 및 다나카(田中) 수상의 성명에 의하면, 제반 진정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① 척식성이라는 명칭을 척무성으로 변경할 것, ② 척무성에 조선부를 특설할 것, ③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는 뜻을 다나카 수상이 성명서를 통해 발표할 것 등 세 가지였다. 다나카 수상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대만, 사할린, 관동주 및 남양군도의 통치에 관한 사무의 통괄기관은 종래 그 주권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통치에 관한 실무의 대강을 통합하고 시세에 대응하여 번영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내각총리대신은 이들 지역의 통치실무를 총괄할 소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 각 대신의 수반으로서 행정 각 부의 통일을 도모하고 여러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도저히 전심하여 이들 지역의 이해와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책의 수립 및 준행을 도모하는 데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특별히 하나의 성(省)을 설치하고 주무 대신을 두어 중앙에서 이들 지역의 이해를 대표하도록 하여 통치사무의 진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원활한 해외 이주를 도모하고 이의 장려, 보호, 지도 등의 업무는 그 관계하는 바가 광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다방면에 나누어지면 사무의 연락과 통일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요무(要務)인 해외에서의 제반 기업의 지도, 장려, 조성 등에 관한 행정의 기능을 더욱 발휘시켜 국운 진전의 수요(須要)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척식성의 중대한 본무로 이식민에 관한 사항을 맡겨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평화적 발전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척식성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조선 재주자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조선인은 똑같은 제국의 신민으로서 일시동인에 추호의 차이도 없다. 각자 위치에서 똑같은 휴명(休明)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한병합의 조서 및 조선총독부 관계개혁의 조서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이번 척무성의 설치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무를 통괄시키려는 것은 위와 같은 성지(聖旨)를 존중하여 조선민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데에 있다. 원래부터 조선을 식민지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다. 요는 주무 대신을 두어 일본과 기타 지역과의 충분한 연락 통일을 갖고, 중앙에서 조선의 이해를 대표하게 함으로써 조선민인의 향상 발전을 조장시키려는 것이다. 척무성 관제의

공포에 즈음하여 설치의 주지에 대해 일언하였다.

## 7. 정기대회 선언결의문

본회는 신일본주의의 정신에 의거하여 8대 강령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정기대회에서 시세의 추이에 순응하고 정치적 시설 혹은 제도상의 개선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한 다음, 본회의 의사를 발표할 방법으로 통상 선언 또는 결의를 행하였다. 정기대회는 매년 1월 18일(국민협회를 조직한 기념일)에 개최된다. 매년 대회에서 이루어진 선언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 제8회 정기대회 결의문

1923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참정권 행사의 즉시 단행을 기한다.
- 지방자치기관의 완성을 기한다.
- 의무교육의 실시를 기한다.
- 사상을 선도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기한다.
- 산업을 개발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김명준(金明濬), 부회장 정병조(鄭丙朝), 총무 이동우(李東雨), 이병렬(李炳烈)

## 제9회 정기대회 결의문

1924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하나, 우리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제국 신민임을 자각시켜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시킨다.

하나, 일시동인의 조칙에 의거하여 조선인의 차별대우를 철저히 철폐시킨다.

하나, 동양도덕을 기초로 삼아 온건 착실한 사상을 함양하고 경조부화(輕佻浮華)의 기풍을 제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전항과 같다.

## 제10회 정기대회 결의문

1925년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 선언

생각건대 우리 조선에서 문화정치가 시행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후 통치는 커다란 공적을 올렸고 모든 것이 향상 발전되었다. 그런데 재계의 공황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가뭄재해는 기아를 가져와 일반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정신없는 무리는 불평불만을 품고, 경조부박(輕佻浮薄)한 기풍이 원근에 넘쳐흐른다. 또 과격한 사상이 내외에 침투되어 세상은 점차 험악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조선 민족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각에 의거하여 권리를 신장시킴과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건 착실한 정기를 진작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근면검소의 미풍을 함양하여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시세와 민도에 순응하여 교육기관을 정비 완비하여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국부(國富)를 증진하고, 이용후생의 길을 열어 노자(勞資)의 협조와 기타 사회 전반을 개선하여 우리 1천 7백만 민중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을 철폐하여 완전한 융화를 도모하고, 내지연장주의하에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 동지는 제10회 정기대회를 열어 더욱 견고한 결속과 정대한 행동을 통해 병합의

대의를 체현하고 시국대책이 어긋나지 않기를 기한다.

#### 결의

- 우리 동지는 문화정치하에서 우리 회가 성명한 신일본주의와 8대 강령의 실현을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윤갑병(尹甲炳), 총무 이병렬(李炳烈),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김우식(金禹植)

### 제11회 정기대회 선언결의문

1926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일한병합의 대의는 우리 조선인의 강복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정치상 사회상의 차별 대우를 받아 참정의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강복을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회는 이에 비추어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의 세월동안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일한병합의 정신을 발양(發揚)할 것을 제국의회에 세 번에 걸쳐 청원하고, 중앙정부에는 네 번에 걸쳐 그 시행을 건백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합의 근본 의의에 배치되는 조선자치론을 주창하는 자가 있어 심히 유감이다. 그 책임은 당국이 시기상조라는 말로 참정권 부여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우리 동지는 열렬한 운동을 통해 용왕매진하여 신속한 실행을 당국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인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 여부에 달려있다. 지방자치의 훈련기관인 도평의원회, 부협의원회 및 면협의원회는 시행 이후 6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아주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를 결의기관으로 삼아 한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추원은 최고 자문기관이라지만 결의권이 없고, 자문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유명 무실한 하나의 양로원에 불과하다. 이 제도를 개혁하여 명실상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병합 이후 당국의 노력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빈약한 우리 조선인의 경제력을 진전시키고 일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교육열이 팽창한 반면에는 산업의 진운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불평도 있다.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확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통교육의 보급을 통해 교육편중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시세의 진운과 사조의 변천은 사회 제반 사정의 개량을 적지 않게 촉구한다. 구태(舊態)를 고집하여 시조(時潮)에 순응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겨 막을 수 없는 악화 경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노자(勞資) 간의 계급투쟁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다. 신구(新舊) 사상을 조화시키고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사회개량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대 급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동지는 어려운 시국에 즈음하여 더욱 결속을 견고히 하고 일치 협력하여 이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천하에 선언한다.

- 참정권 부여의 시기 촉진을 기한다.
- 도평의원회, 부협의원회, 면협의원회를 결의기관으로 만들 것을 기한다.
- 중추원을 완전한 자문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기한다.
- 산업정책을 확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 보통교육의 보급을 도모하고 민지(民智)의 계발을 기한다.
- 사회 전반의 개량을 촉진하여 계급투쟁의 실마리를 방지할 것을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신석린(申錫麟), 총무 이병렬(李炳烈), 김석태(金錫泰),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 제12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문

1927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 선언

소요 이후 인심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회는 8대 강령

을 내걸고 창립 이후 8년의 세월에 걸쳐 안으로는 동포의 사상 선도에 마음을 쏟고, 밖으로는 민족의 권리신장에 힘을 기울여 탁랑노도(濁浪怒濤) 속에서 악전고투를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동지의 정성과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우리 회의 신일본주의는 조선 민족을 일시동인의 신민으로서 애무(愛撫)하는 것과 일본 민족과 추호의 차별 없이 성의(聖意)를 받들어 정치상 사회상으로 일본 민족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균등과 공존공영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로는 당로 관현과 일치협력하고, 아래로는 신구(新舊) 동포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 당국의 시정방침은 회유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신적으로 내선융화의 길을 강구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조선의 개발을 도모하는 데 급급하다. 문물의 천명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민심의 황폐는 날로 심각한 경향을 드러냈다. 독립사상자의 폭력행사와 공산주의자의 파괴활동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본말이 전도된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더욱 혼미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 회의 책임은 더욱 중대할 수밖에 없다.

양암(諒闇) 중에 애도 근신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쇼와(昭和)유신의 성대(聖代)에 우리 동지는 더욱 견고한 결속을 통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회의 사업 진행상의 장애를 배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참정권 획득의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촉진시켜 내선 일가의 실적을 거둬와 동시에 양 민족이 정신적으로 친선 결합하여 영원한 공존공영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제12회 정기대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결의

- 일시동인의 성조(聖詔)에 따라 참정권 획득 시기의 촉진을 기한다.
- 사상 선도의 방침을 확립하여 반국가적 정신의 절멸을 기한다.
- 흥업식산의 정신과 근면질실(勤勉質實)의 기풍을 함양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개량의 촉구를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김명준(金明濬), 총무 이병렬(李炳烈), 김석태(金錫泰), 조병상(曹秉相), 최두환(崔斗煥)

## 제13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문

1928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 선언

회고해보니 일한병합은 시대의 요구에 순응한 과거의 사실이었다. 합병에 의해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된 조선 민중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천황 폐하의 직접 보호하에서 생활의 안정, 문화의 향상, 권리의 신장, 강복의 증진을 통해 일본인과 추호의 차별 없이 일시동인의 성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도 물론 바로 여기에 있다.

병합 이후 총독정치의 제반 시설은 모습을 일신하여 병합 이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단지 물질적 방면의 사업에 불과하다. 정신적 방면으로는 병합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반국가적 사상이 만연하여 비타협주의를 고조(高調)하는 민족단일당의 완성을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 또 공산제도를 구가(謳歌)하여 현 제도를 파괴해야 한다는 사상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피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조선 민중의 8할 이상을 점하는 소작농민을 생각하면 과연 어떨까.

민심의 황폐를 수습하려면 먼저 그것이 안고 있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기존 시책은 관맹상제(寬猛相濟)와 은위병행(恩威並行)에 완전히 충신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을 철폐하고 조선 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조선 민중에게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각을 주어 반국가적 언동을 엄밀히 취체하는 것이 민심 수습의 유일한 양책이다. 법률을 통해 소작농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시무(時務)의 최우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원래부터 국가의 백년대계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친애결합을 확고히 하여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이는 관민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동지는 당국의 금후 시설은 그 중점을 정신적 방면에 두면서 민심의 수습에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또 동지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사상 선도에 전력을 다하고 강건실질한 기풍을 기르기 위해 다음의 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리회는 제13회 정기대회에 즈음하여 이를 선언한다.



## 결의

- 조선과 일본 양 민족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조선 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시기의 성명을 기한다.
- 면협의회, 부협의회 및 도협회의 권한을 확장하고 지방행정의 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촉성을 기한다.
- 반국가적 언동의 취체를 엄밀히 하여 현 제도의 파괴를 기도하는 음모의 절멸을 기한다.
- 소작법안을 제정하여 소작농민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소작쟁의 발생의 방지를 기한다.
- 만주에 이주하는 조선농민을 철저히 보호하여 무리한 중국 관헌의 압박을 받지 않고 거주와 생업의 안전 보장을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김명준(金明濬), 총무 이병렬(李炳烈),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조병상(曹秉相)

## 제14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문

1929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 선언

우리가 신일본주의하에 8대 강령을 내걸고 만세소요<sup>39)</sup> 직후에 분연히 들고 일어난 것은 시대의 진운에 순응하고 세계의 대국(大局)에 착안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과 일본 차별의 철폐와 제도의 합일을 이루어 일한병합의 대정신에 의거한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을 거두어 양 민족의 합체를 통해 형성된 국가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병합 이후 10년간 신정(新政)의 정신이 진실로 산업을 진흥하고 생활의 안고(安固)를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조선의 민중은 식민지 백성인 것처럼 오해를 품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대중에게 반성을

---

39) 3·1운동을 뜻함.

촉구하고 자각을 환기시켜 자포자기적인 경거망동을 경계하고, 제국신민으로서 합리적 요구와 합법적 운동을 통해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여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산업의 개발과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여 생활의 안정,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지방자치 관념을 함양하여 입헌국민의 자격을 완비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지 천황의 합방 조서 및 다이쇼 천황의 관제개혁 조서를 받들어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 조선인을 유도하고, 그 행복이익의 증진을 도모하여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대응하면서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를 일본인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의 시설방침과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성명과도 합치한다. 또한 관민 서로가 흥금을 터놓고 협력 일치하여 조선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문명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성명(聖明)에 보답하려는 사이토 총독의 희망과도 부합된다.

우리는 사이토 총독의 유시(諭示)와 성명을 신뢰하고 그 시정방침에 따라 안으로는 사상의 선도에 힘을 기울이고, 밖으로는 민권의 신장운동으로 총독정치의 진의를 선전하여 일부 민중의 오해를 푸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민심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의 주의와 주장에 공감하는 자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소요 이후 민심이 매우 흥분되어 그 여파는 세계사조의 격변과 더불어 다소 악화 경향을 보였다. 과격한 사상이 청년계를 휩쓴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문화정치에 대한 오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어떠한 근거와 계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상당한 방책을 강구하여 선도해야 한다. 자유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에 해독을 끼치면서까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반국가적 주의와 사상을 고취, 선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으면 필히 반동정치가 온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층 노력하여 일반 민중의 자각을 촉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면 식민지 백성일 수밖에 없다. 우리 조선 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이고, 일각이라도 신속히 획득해야 하는 것은 참정권이다. 우리 조선 민중이 기교한 사상에 물들어 공허한 운동으로 내달려 민족 전체의 앞길을 그릇되게 하지 않고, 합리적 합법적인 민권의 신장과 자유의 획득에 마음을 모아 문화적 정치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제14회 정기대회를 개최하며 2천만 민중과 함께 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각아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촉진하고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보급과 산업의 개발을 도모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하고 용왕매진할 것을 천하에 선포한다.

#### 결의

- 온건한 사상과 실질의 기풍을 함육 양성하여 입헌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할 것.
- 조선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중앙정부에 건백하고 제국의회에 청원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것.
-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촉진하도록 운동할 것.
- 우리의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여러 사항에 대해 널리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줄 것.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김명준(金明濬), 총무 이병렬(李炳烈), 김석태(金錫泰), 이동우(李東雨), 최덕(崔惠), 김환(金丸), 허주(許柱), 박인중(朴麟鐘)

### 제15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문

1930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 선언

조선통치의 근본 의의는 내지연장주의에 의거해 일선 양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추호의 차이 없이 폐하의 적자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양 민족 사이에 문화의 수준과 부력(富力)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독정치의 시설이 일본과 다른 것은 조선이 마치 특수구역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에 조선 민중은 불평을 터뜨리고 의구심을 품기에 이르렀고 사상계는 악화 경향을 보여 심히 전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서 8대 강령을 내걸고 펼쳐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다. 내선융화

에 노력하여 조선 민중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루라도 빨리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을 올려 내지연장주의의 관철을 도모하고자 매진해왔다.

지난번 중앙정부가 새로이 척무성을 설치하고 조선도 그 관할하에 두고자 했을 때, 우리는 이 안이 내지연장주의와 모순되고 조선 민중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과감히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내각총리대신은 척무성의 설치와 함께 조선부를 특설하고,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은 척무성으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키려던 최초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성명이 우리 조선 민중에게 의구심을 없애고 안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사이토 총독은 재임 이후 내지연장주의의 실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의 확장을 실시했는데, 이는 민권을 신장하고 민의를 창달하는 첫걸음이다. 이는 일선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는 두 손 들어 찬성한다. 하지만 한걸음 나아가 지정면(指定面)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통면에서도 결의권을 부여할 것을 희망한다.

아직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많은 조선 민중은 총독정치를 조선인 본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일선 양 민족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내지연장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 민중의 사상을 안정시키고 국가 관념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문화의 발달과 부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항구적 세계평화를 유지할 기초를 쌓으려는 1930년을 맞이해 2천만 민중과 함께 기교하고 과격한 사상에 빠지지 않으며, 경조부박한 기풍에 해매지 않고, 계급투쟁을 부추겨 종족 감정을 도발하는 언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함은 물론 상호부조와 공영동창(共榮同昌)으로 우리 조선 민중의 지위를 향상시켜 행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제15회 정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희망과 요구를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천하에 선포한다.

#### 결의

- 참정권 부여의 실현을 기한다.
-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기한다.
- 소학교육에서 조선과 일본공학제도의 채택을 기한다.
- 동양도덕의 고유한 미풍을 기초로 삼아 사상의 안정을 기한다.

- 근검절약의 기풍을 양성하여 생활의 개선을 기한다.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백작 송중헌(宋鍾憲), 부회장 김관현(金寬鉉), 총무 이병렬(李炳烈), 유진명(俞鎭明), 오태환(吳台煥), 최덕(崔憲), 박철희(朴喆熙), 김형진(金衡鎭), 이주연(李周淵), 김환(金丸), 이동우(李東雨), 김석진(金錫晉)

### 제16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문

1931년 1월 18일 정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 결의하였다.

선언(1931년 1월 18일 대회 석상에서)

지금 조선대중은 이론투쟁의 무익함에 권태를 느끼고 현실의 욕구를 정치적 운동으로 모색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특히 지방제도의 개정 결과, 부읍에서는 거의 완전한 자치단체를 갖추어 지방참여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로 삼아 구체적인 운동 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한결같이 2천만 대중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부인의 참정운동이 더욱 거세져 지금은 시정촌(市町村)의 공민권을 부인에게 부여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남자의 중앙 참정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여 영원한 대계를 세우려면 일시동인의 성지를 신속히 합법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채택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오늘날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정자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1대 회장인 고 민원식 군의 피의 희생 10주년을 기념해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

- 신속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
- 신속히 면제를 개정하여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만들 것.

- 널리 공민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완비를 기할 것.
- 신속히 재계불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조선에 실시할 것.

비고) 당시 본회 간부는 회장 백작 송종헌(宋鍾憲), 부회장 이병렬(李炳烈), 총무 오태환(吳台煥), 정규환(鄭圭煥), 이주연(李周淵), 차종호(車宗鎬), 임창수(林昌洙), 김의용(金義用), 김석진(金錫晉)

## 8. 고 민원식(閔元植)과 국민협회

일한병합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목표로 한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일한병합은 피폐가 극에 달하고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던 열강 사이에서, 자존 자립할 실력이 없는 조선 민족이 생존권을 보증하고 강복을 증진시키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양국 원수의 병합 조서를 비추어보아도 그렇다. 조선 민중은 병합의 대정신에 따라 총독정치 하에 양 민족의 융화결합을 도모하고 공존공영의 대의로 권리의 신장과 행복의 증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선일가의 결실을 올려야 함은 당연하고도 명료한 사실이다. 그런데 1919년에 발발한 소위 조선독립소요는 조선 민중을 패망의 심연에 빠뜨린 불상사로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소요가 일어난 이유를 검토하면 그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최대원인으로는 조선 민중이 병합의 정신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 민중은 일한병합의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조선인은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되어 아프리카의 흑색인종이나 미국의 흑색인종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피압박민족의 무리가 되었다는 비판을 품게 되었다. 조선 민족이 이러한 오해를 품게 된 것은 병합 이후 총독정치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압적인 무단통치로 권리신장을 억압하고 활동의 자유를 속박했기 때문이다. 독립소요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단통치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소요로 인해 조선의 민심은 매우 들끓어 여러 곳에서 반국가적 언동이 돌출되어 아무튼 내선일가의 결실을 올리는 데 일대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 민원식은 이를 심히 우려하여 소요의 선후책을 강구하여 시국 수습에 공헌하고자 동지와 논의하였다. 조선 전도(全道)의 유식계급을 망라하여 유력한 단체를 조직하고, 사상 선도를 유일한 목적으

로 삼아 그 실행을 위해 지방유세와 언론기관의 힘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하였다. 곧바로 계획을 세워 당시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와 내무부장 우사미 가즈오(宇佐美勝夫)의 양해를 얻어 협성구락부(현 국민협회의 전신)를 조직하고 반독립운동을 개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을 진동시킨 만세소요는 마치 연못에 돌맹이를 던진 것처럼 거대한 파문을 반도 산하에 미쳐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으로 커다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이 시대의 불상사를 개탄하여 분연히 들고일어나 소요의 선후책을 강구한 결과, 당시 신문잡지를 통해 시국 수습에 관한 장문의 의견을 발표하여 반독립운동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이는 소요에 버금가는 커다란 반향을 사회에 던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 민중은 소요에 대한 제국정부의 정책이 혹시 무단통치 이상의 고압수단으로 나오지 않을지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결과 천도교 일파, 법조계 일파, 기타 사회에 지위 있는 자 등은 자진해서 민원식이 조직한 협성구락부에 가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사이토 총독과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이 대명을 받들어 조선에 와서 ‘문화정치’를 성명하자,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식은 불굴의 강한 의지로 먼저 도쿄에 건너가 신일본주의를 선명하여 정부 대신 및 중요 정객의 양해를 얻고, 나아가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의 소개로 고(故)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백작을 면회하여 각종 계획을 설명한 다음, 경성에 돌아와 협성구락부의 조직을 변경하여 국민협회로 바꾸었다. 그리고 제42회 제국의회에 참정권 요구의 청원을 제출하였지만 때마침 의회의 해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귀족원과 중의원의 동정을 넓힌 것도 사실이다. 도쿄에서 돌아온 민원식은 곧바로 시사신문을 발간하고, 중요 지방에서는 순회강연을 통해 신일본주의의 선전과 더불어 참정권 획득을 급무로 할 것을 설득하여 흥분된 민심의 선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43특별의회에 참정권 요구 청원을 제출하고 그 채택운동에 분주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회기가 짧아 청원위원회로부터 정부에 참고송부가 되어 결국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식의 성의는 정부 및 총독부가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총독부 당국 특히 미즈노 총감과 같은 이는 민원식의 운동에 원조를 약속하였다. 또 민원식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 참여관, 군수 등도 다수 등용되었고, 민원식의 순회강연에 대해서도 지방관헌은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다. 13도를 통해 그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셨다. 민원식이 가는 곳에는 지부가 설치되었고, 지방의 유력자는 앞 다투어 입회하여 회세(會勢)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민원식은 시국수습과 인심안정의 임무를 양 어깨에 메고 제44회 제국의회에 참정권 요구의 청원을 제출하여 활동하던 중,

홍한의 칼을 맞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동안 운동을 위해 소진한 사재는 실로 20여 만 원에 달했다. 민원식의 생전에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던 시사신문사는 민원식의 사망과 더불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자금조달의 길이 막막해 결국 휴간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민협회는 중심인물을 상실하여 일시적으로 그 유지조차 곤란한 상태였다가 당국의 보조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20년 무렵에는 자치령을 장래의 목표로 삼으려는 회색주의자인 유민회(維民會), 주의와 강령이 선명하지 않은 청년회, 기타 노동공제회 등이 있었는데 그 활동상은 미미한 것이었다. 1921년에 이르러 민원식의 순사(殉死) 이후 본회 활동도 미약해졌고, 기관지인 시사신문의 휴간을 틈타 좌익파의 언론신문이 더욱 발호하여 공산주의 색채가 농후한 각종 사상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국민협회의 활동은 그들에게 압도당하여 대항할 힘이 없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조우하였다. 미즈노 정무총감 재임 당시에는 참정권 요구건백서에 서명한 자가 13,000명을 헤아렸다. 일반 민중의 반성에 따라 회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고(故)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이 부임하자, 그는 회유수단을 통해 좌익파 무리를 발탁하여 고관으로 등용하고, 국민협회에 대한 조치는 아주 냉담하여 참정권 운동과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국민협회원으로서 군수인 자가 참정권 요구건백에 찬동시키려고 권유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국민협회에 입회하는 것에 대해 경무 관헌이 조사하고 간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과거 수년간 국민협회는 활동의 자유를 제한당한 반면, 좌경파의 활동은 더욱 성장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대개 새로이 복속된 영토의 통치는 자칫하면 그 민족의 첨단(尖端)을 농락하려고 회유수단을 사용하는 폐단에 빠지기 쉽다. 조선통치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사실상 존재한다. 당국으로서는 단순한 하나의 유고나 훈시 내지 관리의 과장적 선전 등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관민육력(官民戮力) 즉 관은 신상필벌(信賞必罰), 은위병행(恩威並行)의 확실한 방침을 세워 민으로 하여금 그 귀의(歸依)와 외구(畏懼)의 한계를 알리고, 또 민은 관의 정신을 체득하여 국민적 관념을 함양하여 하루라도 빨리 내선일가의 실적을 거두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착실한 민간단체를 원조 지도하여 적어도 유식계급과 자산계급의 인사를 다수 망라한 일대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원으로부터 면협의회원이나 부회의원 및 도평의원 등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에 참여시키거나 혹은 그 단체의 유자격자를 골라 관리로 등용하고 기타 여러 편익을 주어야 한다. 모든 조선 민중을 제국정치에 탄복시킬 증거를 제시하여 병합의 대정신을 관철하는 것에 통치의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믿는다.



이후 조선의 사상 통치정책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당국에 헌책하였다. 많은 것이 타산지석으로서 시정상의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사상의 선도 및 취체의 방책은 관맹상제주의(寬猛相濟主義)를 통해 언론기관과 집회결사 등에 국가의 존립과 맞지 않는 사상을 품거나 중립이 결여된 운동은 엄히 경계하고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진언하였다.

민원식 사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시세의 추이는 주마등처럼 실로 금석창상(今昔滄桑)과도 같다. 일본 거주 조선인 동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여 정치상으로는 내지 동포와 추호의 차이가 없다. 또 조선에서도 금년 4월부터 부읍면제(府邑面制)를 발표하여 거의 완전한 가까운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고 지방참정권이 일반에게 부여되었다. 이제 국민적 관념의 함양 및 문화 정도의 향상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중앙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지하에 있는 민원식의 영령도 이에 만족할 것이다.

## 9. 고(故) 정암(正菴) 선생 약전

정암 선생은 누구일까. 본회 제1대 회장인 고 민원식이 바로 그 사람이다. 민비가 몰락한 해에 정암은 불과 8세의 나이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한 청나라 상인을 따라 청국의 작은 도시 보정부(保定府)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약 2년간 거주하다가 11살에 조선에 다시 돌아왔지만, 당기도 민씨 일족은 정부의 압박을 받아 신분은 여전히 불안하였다. 홀로 아침에는 동쪽으로 밤에는 서쪽으로 끝없는 유랑 여행을 계속하며 사방을 전전하였다. 전조선 13도 가운데 전라남북 양 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가는 곳마다 신동으로 맞아들여져 그 총명함과 비범함에 모두 놀랐다. 때로는 기적적인 일화와 신화적인 로망스를 여러 번 남겼다. 대지는 넓다고 하지만 그가 안주할 곳은 없었다. 결국 뜻을 정해 일본으로 향했다. 당시 12살이었다. 일본에 체류한 지 8년만인 20살에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의 산천을 밟았다. 시세는 변하여 이듬해 통감부가 설치되자 총애를 아끼지 않았던 고(故) 이토(伊藤) 공(公)의 추천으로 구한국정부의 내부 위생과장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사직하고 프랑스로 유학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시의 일본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당조직의 의지와 언론경세의 생각을 품고 당시 한국의 2대 정당인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중간당으로서 정우회를 조직하여 그 수령이 되었다. 또 기관지 시사신문을 발행하여 사장이 되면서 크게 보폭을 넓혔다. 하지만 일한병합이 이루어져 신정 실시와 더불어 정우회는 해산되었고, 시사신문은 폐간되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총독부 군수로 등용되어 경기도 내의 두세 군데 군에 역임하다가 1919년 3월 1일 소요사건이 돌발하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술선하여 시국수습의 길에 나서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일선 양 민족의 공존공영과 융화결합을 근본으로 한 ‘신일본주의’를 제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 거액의 자금을 들여 일신을 희생하여 이바지하고 광란의 노도(怒濤)에 악전고투를 지속해 동지를 규합하여 같은 해 8월 협성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듬해 그는 이를 국민협회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 시사신문을 발행하여 주의와 주장의 선전에 노력하였다. 더욱이 조선인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처음으로 제42회 제국의회에 청원하였다. 청원은 세 번에 걸쳐 계속되었다. 세 번째 청원을 제44회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각 방면으로 분주하던 중, 불행하게도 흥한의 칼에 찔려 중추원 부참의 직분으로 위독하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특지(特旨)로 위계를 높여 훈4등을 수여받았고, 당시 중의원에서도 많은 동정을 받아 만장일치로 생전에 추구하던 참정권운동의 청원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921년 2월 16일 도쿄역 호텔의 한 방에서 순국하였다. 향년 35세였다.

## 〈부〉

### 회규

회칙(1931년 1월 18일 제16회 정기대회에서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국민협회라 칭하고,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지에 지부를 둔다.

제2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7인(단 3인은 상임으로 함)

간사 약간 명

평의원 50인

제3조 회장, 부회장, 총무(상임 3명을 포함), 평의원은 대회에서 선거하고, 각기 임기는 2개년으로 한다. 단 간사는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는 회무를 장리(掌理)하고, 간사는 회무에 종사한다.

제5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6조 평의원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본회에 서무부, 조사부, 선전부를 두고, 부장은 상임총무로 이를 총당한다.

제8조 본회에 고문 및 상담역을 둔다. 고문 및 상담역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촉탁한다.

제9조 지부의 설치 및 규약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본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입회금 1원이 필요하다.

제11조 본회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본부 및 지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인정된 자는 제명한다.

제13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하고 연각금(年釀金) 1원으로 한다.

## 제2장 대회 및 평의원회 및 부칙

제14조 대회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회무의 대강을 의정(議定)한다.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대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의결은 출석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17조 평의원회는 매년 4회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이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매년 제1회 평의원회에서 선정한다.

## 부칙

본 칙은 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서무에 관한 세칙은 평의원회의 회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국민협회 상무위원회 규정

제1조 본부에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2조 상무위원회는 다음 임원으로 조직한다.

상무위원장 1인

상무위원 약간 명

간사 1명

제3조 상무위원장은 총무 중에서 회장이 이를 촉탁한다. 위원은 경성 및 각 지방의 회원 중에서 평판과 경력이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이를 촉탁한다. 간사는 본부간사 중에서 위원장이 촉탁한다.

제4조 상무위원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조사 장리(掌理)한다.

1. 당세 확장에 관한 사항
2. 정무 및 민정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후보 공인 및 선거에 관한 사항
4. 제반 정보 모집에 관한 사항
5. 우당(友黨) 연락에 관한 사항

제5조 당무위원은 위원장의 지휘에 의해 앞 조의 각 항을 조사 보고한다. 지방에 있는 당무위원은 앞 조의 각 항을 조사 보고하고 지방 정황을 수시로 조사 보고한다.

제6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당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 본 규정은 대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이를 존폐할 수 있다.

국민협회 본부 세칙(1930년 1월 23일 제56회 평의원회에서 개정)

### 제1장 사무분장

제1조 서무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사 기밀에 관한 사항
2. 문서 접수 발송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공인(公印) 보관에 관한 사항

4. 지부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 및 출납용도에 관한 사항
7.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8. 타부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2조 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1. 참정권 문제에 관한 사항
2. 자치제도에 관한 사항
3.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5.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6. 풍속습관에 관한 사항
7. 노자문제에 관한 사항
8. 소작제도에 관한 사항
9. 조세 및 공과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 사항

제3조 선전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주의 선전에 관한 사항
2. 신문잡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저술 및 번역에 관한 사항
4. 연설 및 강연에 관한 사항
5. 회보 및 회사(會史) 편찬에 관한 사항

## 제2장 회무처리

제4조 집무에 관한 규정은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본부에 서기 약간 명을 두어 회부에 종사시킨다.

제6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제3장 회계 및 예산 결산

제7조 본회의 회계는 서무부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8조 회의 경비로 50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할 때는 간부회에서, 300원 이상은 평의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제9조 서무부장은 매월 회계보고를 간부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는 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는 역년(曆年)에 따른다.

제12조 매 연도의 결산보고 및 예산안은 정기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출장 여비는 예산에 의해 간부회가 이를 정한다.

#### 제4장 회비

제14조 회비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단 수 회로 분납할 수 있다.

제15조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6조 지부에 속한 회원의 회비는 해당 지부에 납부해야 한다.

#### 제5장 고문 및 상담역

제17조 고문 및 상담역의 위탁 기한은 각 1년 이내로 한다.

#### 제6장 지부 설립 및 폐지

제18조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회장에게 청원해야 한다.

1.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역
2. 회원 50인 이상이 연서할 것
3. 유지방법

제19조 지부 설립의 청원이 있을 때는 간부회를 거쳐 회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 지부의 경비는 해당 지부에 속한 회원의 회비 중 3분의 2로 이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21조 다음에 해당하는 지부는 간부회를 거쳐 회장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1. 지부의 준칙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2. 지부로부터 폐지 신청이 있을 때
3. 지부를 지배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부로서 본회의 체면을 오손했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 지부의 준칙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본회의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를 개최한다.

1. 정기대회
2. 평의원회
3. 간부회의 및 상담역회의

제24조 정기대회는 매년 1월 18일에 개최한다.

제25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부의 예산 및 결산
2. 대회에 제출할 의안
3. 간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4.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정기평의원회는 3월, 6월, 9월, 12월로 한다.

제27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 평의원으로서 평의원회에 출석하기 불가능한 때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평의원에 한한다.

제29조 간부회는 매주 1회 화요일에 개최하고, 상담역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30조 간부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로 조직한다. 단 특별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고문을 참석하게 한다.

제31조 평의원회에는 간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32조 간부회 또는 평의원회는 평의원 5인 이상, 회원 20인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  
는 임시로 이를 개최해야 한다.

제33조 본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
2. 비품대장
3. 일지
4. 회원명부
5. 임원명부
6. 도서대장
7. 지부대장
8. 회의록

## 제7장 부칙

제34조 본 세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본칙은 19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협회 평의원회 규칙(1930년 1월 18일 제15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1조 본 의회는 평의원으로 조직하되 회칙 총재 회장, 총무도 출석할 수 있다.

제2조 본회 의장 선거방법은 회칙 제18조 제2항을 적용한다. 단 의장 유고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이를 대리한다.

제3조 본 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간부 또는 의원 5인 이상, 회원 10인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4조 본 의회 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

제5조 본 의회 정기회는 본회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개최하되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본 의회는 일반회원이 대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을 평의하고 취사선택한다.

제7조 본 의원의 결의안은 회장을 경유하되 회장이 이에 대해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 본회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보고하게 한다.

제9조 본 의회장이 정기회나 임시회는 물론하고 연 3차 무고 결석할 경우에는 대회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본 규칙은 대회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상



◎ 현재 임원 일람표(1931년 1월 현재)

| 직 책 | 이름          | 주소              |
|-----|-------------|-----------------|
| 회 장 | 백작 송종헌(宋鍾憲) | 경성부 광화문동 136    |
| 부회장 | 이병렬(李炳烈)    | 경성부 서대문정 3-61   |
| 총 무 | 오태환(吳台煥)    | 경성부 통의동 83-1    |
|     | 정규환(鄭圭煥)    | 경성부 사직동 263     |
|     | 차종호(車宗鎬)    | 경성부 어성정 102     |
|     | 이주연(李周淵)    | 경성부 홍파동 4-1     |
|     | 김의용(金義用)    | 경성부 태평동 2-366   |
|     | 김석진(金錫晉)    | 경성부 태평동 2-305   |
|     | 임창수(林昌洙)    | 경성부 중학동 110     |
| 평의원 | 이종식(李種植)    | 경성부 체부동 178     |
|     | 권오용(權五鎔)    | 경성부 예지동 138-1   |
|     | 윤기현(尹冀鉉)    |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215 |
|     | 천영기(千英基)    | 경성부 와룡동 1       |
|     | 위종기(魏鐘冀)    | 금천군 읍내          |
|     | 정민화(鄭民和)    | 경성부 적선동 164     |
|     | 한문관(韓文寬)    | 경성부 이화동 202     |
|     | 장병두(張秉斗)    | 경성부 종로 3-173    |
|     | 김봉수(金鳳洙)    | 경성부 송월동 108     |
|     | 김홍규(金鴻圭)    | 경성부 삼청동 25      |
|     | 우홍명(禹泓命)    | 경성부 죽림동 1-88    |
|     | 강재용(姜在鎔)    | 경성부 황금정 7-42    |
|     | 이계호(李啓浩)    | 홍천군 화촌면사무소      |
|     | 김종원(金鐘元)    | 경성부 창신동 140     |
|     | 허주(許柱)      | 경성부 송현동 20      |
|     | 박인중(朴麟鐘)    | 경성부 황금정 1-181   |
|     | 이종국(李鍾國)    | 경성부 연지동 136     |
|     | 이강혁(李康赫)    | 경성부 적선동 133     |

|     |          |                |
|-----|----------|----------------|
|     | 이경선(李敬善) | 경성부 봉익동 40     |
|     | 박태용(朴台鏞) | 경성부 재동 45-3    |
|     | 윤익주(尹翼周) | 경성부 송월동 62     |
|     | 박규화(朴奎和) | 경성부 송월동 62     |
|     | 권태진(權泰鎭) | 경성부 창성동 110    |
|     | 윤필구(尹弼求) | 경성부 낙원동 289    |
|     | 이계복(李啓福) | 경성부 통의동 83     |
|     | 심상봉(沈相鵬) | 경성부 서린동 133    |
|     | 홍신권(洪信權) | 황해도 신천군 읍내 교탑리 |
|     | 김노철(金老喆) | 부산부 보영정 3-41   |
|     | 전항련(全恒鍊) | 평북 구성군 읍내      |
|     | 전상우(全相雨) |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사무소 |
|     | 오헌창(吳憲昌) | 광주군 읍내 수기옥정    |
|     | 김하섭(金夏涉) | 함흥부 내신창리       |
|     | 김관선(金寬善) | 순천군 선소면 연당중    |
|     | 박창진(朴昌鎭) | 해주군 나덕면사무소     |
|     | 이상하(李相夏) | 강원도청 지방과       |
|     | 최기항(崔基恒) | 경의선 사리원        |
|     | 박성주(朴性宙) | 회양군 난곡수리조합     |
|     | 김승연(金承淵) | 평양부 기림중        |
| 고 문 | 엄준원(嚴俊源) | 경성부 수창동 176    |
|     | 김명준(金明濬) | 경성부 적선동 212    |
|     | 신석린(申錫麟) | 경성부 관수동 127    |
|     | 윤갑병(尹甲炳) | 경성부 종로 5-115   |
|     | 정병조(鄭丙朝) | 경성부 계동 127     |
|     | 김중환(金重煥) | 경성부 당주동 30     |
|     | 김석태(金錫泰) | 경성부 평동 13-1    |
|     | 김관현(金寬鉉) | 경성부 공평동 49     |
| 상담역 | 이겸제(李謙濟) | 경성부 옥천동 123-2  |
|     | 한영원(韓永源) | 경성부 권농동 34-1   |
|     | 김우식(金禹植) | 경성부 창신동 139    |

|             |                |
|-------------|----------------|
| 남작 김영수(金英洙) | 경성부 입정정 150    |
| 최두환(崔斗煥)    | 경성부 관훈동 4-2    |
| 조병상(曹秉相)    | 경성부 관훈동 197    |
| 우성현(禹成鉉)    | 경의선 소사역내       |
| 박철희(朴喆熙)    | 경성부 화동 35      |
| 유진명(俞鎭明)    | 경성부 계동 74      |
| 권익상(權益相)    | 경성부 돈의동 160    |
| 석명선(石明瑄)    | 경성부 훈정동 66     |
| 이택규(李宅珪)    | 경성부 냉동 79      |
| 서병협(徐丙協)    | 시흥군 군포장우편소     |
| 서병조(徐丙朝)    | 대구부 명치정 2-129  |
| 한준석(韓準錫)    | 함남 흥원군 주익면사무소  |
| 전덕룡(田德龍)    | 평양부 수정 30      |
| 이명환(李明煥)    | 의주군 읍내 서부동 73  |
| 엄달환(嚴達煥)    | 강원도 영월군 읍내 수흥리 |
| 김기태(金琪泰)    | 진주군 읍내 평안동     |
| 문명기(文明琦)    | 경북 영덕군 읍내 강구리  |

1931년 10월 7일 인쇄

1931년 10월 10일 발행

**【비매품】**

편집 겸 발행자 : 경성부 서대문정 2-61 이병렬(李炳烈)

인쇄인 : 경성부 수송동 27 조진주(趙鎭周)

인쇄소 : 경성부 수송동 27 선광인쇄주식회사(鮮光印刷株式會社)

발행소 : 경성부 태평동 2-366 국민협회 본부

전화 : 본국 2454번

예금 : 경성 7929번

〈출전 : 國民協會 宣傳本部 編 『國民協會運動史』, 1931년 10월〉

## 9) 친일업(親日業) 11단체의 소위 간부간담회(기사)

### - 민중의 의사와 배치되는 행동, 철저반동의 그 협의 내용

시내에 있는 소위 정치적 친일단체인 갑자구락부, 동민회, 대정친목회, 대동동지회, 국민협회, 청림교, 실업구락부, 조선교육협성회, 조선군인장교회, 수양단, 명치회 등 11 단체의 간부 간담회라는 것이 24일 오후 5시부터 시내 남대문동 1정목 식도원에서 열렸는데, 간담회에 모인 51명의 인물이 의견일치로 가결하였다는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아서 민중의 비웃음과 격노가 고조되는 중이더라.

- 정치 문제는 어디까지나 참정권 획득을 주된 목표로 하여 금년 의회에도 부여청원 운동을 일으키고 그 실현에 진력할 것
- 경제 문제는 종래 당국의 산업 발달에 치중한 까닭에 불원(不願)하게 되며 하등의 발전의 자취가 없었던 조선의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육 문제는 조선인 일본인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여 그 실현에 노력할 것
- 사회사상 문제는 조선공산당사건이 증명함과 같이 우려할 상태이므로 당국의 더 엄중한 단속을 희망할 것

〈출전 : 親日業 11단체의 所謂 幹部懇談會, 『中外日報』, 1927년 11월 28일〉

## 10) 조선 참정권 부여에 관한 청원서(김명준 외 13명, 1933)

1933년 2월 7일

청원(請願) 제742호

중의원 의원 박춘금(朴春琴)

## 조선 참정권 부여에 관한 청원서

청원인 김명준(金明濬) 외 13명

### 청원서

#### 주지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바란다.

#### 이유

우리 동지는 지난 제42회 제국의회, 제43회 제국의회, 제44회 제국의회에 참정권 요구를 청원하여 채택되는 영광을 얻었고, 이어서 그 실시를 중앙정부에 10회에 걸쳐 건백하였지만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시 네 번째로 청원하여 거듭 2천만 민중의 의사를 밝힌다.

일한병합이 이루어진 지 벌써 24년, 관제개혁의 성조(聖詔)가 내려진 지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반 제도의 개선에 따른 문물의 발달과 민도의 향상은 실로 놀랄만하다. 1931년 4월에는 새로이 자체제도가 시행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지방자치의 제도가 필히 중의원 의원 선거법 시행의 전제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리 2천만 민중은 만강(滿腔)의 열성으로 10년을 하루 같이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망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실행 기일을 성명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슨 연유인가. 2천만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적자가 쓸데없이 초조민절(焦燥悶絕)한 나머지 자포자기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창대용운(昌代隆運)을 위해 장탄대식(長歎大息)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민은 이미 중의원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하였다. 바라건대 각하의 현명함으로 조선의 시국을 잘 살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곧바로 우리의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란다.

1933년 2월

|                           |           |          |     |
|---------------------------|-----------|----------|-----|
| 주소 경기도 경성부 적선동 212        | 국민협회 이사장  | 김명준(金明濬) | 63세 |
| 주소 경기도 경성부 가회동 4          | 경기도 평의회원  | 장홍식(張弘植) | 51세 |
| 주소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수정 70     | 충청북도 평의회원 | 방인혁(龐寅赫) | 56세 |
| 주소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금정        | 충청남도 평의회원 | 권익채(權益采) | 57세 |
| 주소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읍 완산정 135   | 전라북도 평의회원 | 이강원(李康元) | 70세 |
| 주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읍 본정 3정목    | 전라남도 평의회원 | 오헌창(吳憲昌) | 55세 |
| 주소 경상북도 대구부 명치정 2-129     | 경상북도 평의회원 | 서병조(徐丙朝) | 48세 |
| 주소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 이동리       | 경상남도 평의회원 | 이강찬(李康澌) | 49세 |
| 주소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신남천리 53-12 | 황해도 평의회원  | 신원희(申元熙) | 52세 |
| 주소 평안남도 평양부 교구리 125번지     | 평안남도 평의회원 | 정관조(鄭觀朝) | 74세 |
| 주소 평안북도 의주군 대성면 도상 48     | 평안북도 평의회원 | 강이황(姜利璜) | 37세 |
| 주소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 강원도 평의회원  | 남상학(南相鶴) | 55세 |
| 주소 함흥부 신창리 함경남도           | 평의회원      | 김하섭(金夏涉) | 46세 |
| 주소 회령군 팔을면 장무동            | 함경북도 평의회원 | 이흥재(李興載) | 53세 |

중의원 의장 아키타 기요시(秋田清) 전(殿)

〈출전 : 朝鮮二參政權附與二關スル請願書, 1933년 2월 7일,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請關係』〉

## 11)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청원(김명준 외 13명, 1934)

### 청원안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청원

청원인 김명준(金明濬) 외 13명 제출

#### 청원의 요지

일한병합 이후 조선은 제반 제도의 개선에 따라 문물의 발달과 민도의 향상이 실로 놀랄 만하다. 최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경하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여기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에 조선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중의원은 이 취지가 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 위에 대한 의견

조선통치의 방침인 일시동인의 대의를 좇아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대계가 일찍부터 정한 바이다. 지금은 문물의 발달과 민도의 향상이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대계를 소술(紹述)하고 병합의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완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정권 부여 문제와 같은 것은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정도에 따라 적부(適否)를 결정해야 한다. 제반 사정을 바라보건대 지금 곧바로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위 각의를 청한다.

1934년 1월 26일

척무대신, 내무대신, 내각총리대신 귀하

## 설명

일한병합의 취지는 당시 공표된 조서에 명백히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순치보거(脣齒輔車), 동종동문(同種同文)의 관계에 있다. 일한 양 민족을 결합하여 일시동인의 성지(聖旨)에 기초해 일가(一家)의 친(親)을 맺어 조선의 질서와 공안을 확립하고, 양 민족 공통의 이익 증진과 동창공영(同昌共榮)을 통해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여 장차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다름 아닌 동양 평화와 문화를 바라는 제국 국시(國是)의 진전이다.

제국정부는 병합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고, 총독은 명을 받들어 육해군 통솔과 제반 정무를 통괄하였다. 종전의 방대한 정무기관을 간축함과 동시에 통치의 신제도를 정하고 특히 경무기관을 총독 직속으로 삼아 헌병경찰의 통합제를 실시하여 시급한 보안에 대응하였다. 또 자문기관으로 중앙에 중추원, 각 도부군에 참여관 및 참사를 특설하고 나아가 서정을 쇄신하고 질서를 회복하였다. 교육과 인문의 발달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확실히 함으로써 피폐한 민심을 진작하고 특히 산업을 개발하여 피폐된 국토를 진흥할 방침으로 신정(新政)을 펼쳤다.

이후 조선통치의 당면한 사태에 즈음하여 그는 병합의 본지를 받들어 반도의 개발과 민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훌륭한 치적을 올렸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세의 변천이 급격해져 적절하고 유효한 제도와 시설도 때로 시운(時運)과 그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시정혁신의 기운이 점차 무르익는 시기에 즈음하여 재외 조선인 가운데 소위 민족자결주의의 취지를 오해하여 민중을 선동, 협박하는 자가 생겨났다. 뜻밖에 1919년 3월 강토 각지에 독립소요가 야기되어 진압에 수개월이 필요하여 제도혁신 계획은 잠시 주춤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르러 드디어 총독부 관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관제 개정의 대강은 민도 진전의 정황을 고려하여 총독으로 문무관을 병용하고, 헌병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 본지는 당시 조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내선 일시동인과 문명적 정치를 확립하고 더욱 반도의 민중을 끌어안아 결국 내지인과 동일한 지위로 세운 다음, 그 장점을 발휘하여 동양의 발전에 참여시킴으로써 영원히 분명한 혜택을 주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더욱이 지방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껴 1920년 7월 관련 제반 법령의 제정과 개폐를 실시하고, 주로 도(道)지방비와 학교비 및 부면(府面) 지방단체에 대해 공선(公選) 혹은 임명 자문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재정의 운용상



하나는 민의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후 10년 동안 총선거와 임명은 네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시 성적은 대체로 양호하고 지방단체의 시설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지방의 발달 및 민도의 향상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제도운용의 지식 또한 현저히 진보하였다. 더욱더 각 제도를 개정하여 사회의 진보에 적응시키면서 장래의 이상인 지방자치의 확립에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성을 느껴 1930년 일반 조선지방제도를 개정하였다. 부(府)의 학교조합 및 학교비를 부로 통일하고, 면(面) 이외에 읍(邑)을 설치와 함께 도 및 부에 종래의 자문기관과 읍회를 의결기관으로 만들었다. 모든 단체의 의원은 선거제도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여(단 도는 의원 정수의 3분의 2), 같은 해 12월 1일 이를 공포하고 도제(道制) 이외는 193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조선지방제도 개정 이후 첫 선거는 1931년 5월 21일 각지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그 성적은 각지 모두 양호하여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도제의 제정은 실로 중요한 개정이다. 도의 시설은 그 관련된 부분이 광범위하여 지방민의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 실시는 기초단체인 부읍면(府邑面) 제도가 완성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잠시 실시를 보류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개정이 대체로 예정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도회 의원 선거는 5월 10일 일제히 실시하였고, 임명 의원은 5월 11일자로 발령을 내렸다. 선거 및 임시도회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이렇게 제국정부는 종래부터 반도의 개발과 민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더욱 시세의 진보와 국내 실정에 대응하여 시설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원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각각 조사 연구에 힘을 다하여, 그에 따라 제반 계획(規畫) 경영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방제도 확립에 한걸음 나아간 오늘날,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지금 곧바로 조선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실시하라는 것은 부적당하다.

〈출전 : 請願案 朝鮮二衆議院選舉法ヲ施行ノ請願 1934년 1월 26일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情關係』〉

## 12) 조선 참정권 시행에 관한 청원서(김명준 이하 1,214명, 1935)

소개의원 박춘금(朴春琴)

### 조선 참정권 시행에 관한 청원서

김명준(金明濬) 이하 1,214명

중의원 의장 하마다 구니마츠(濱田國松) 전(殿)

#### 청원서

##### 주지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속히 시행할 것을 바란다.

##### 이유

우리 조선은 황공스럽게도 메이지대제(明治大帝)가 환발(渙發)한 일한병합의 조서에 따라 일시동인(一視同仁), 즉 폐하의 적자임에 추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바야흐로 1935년 비상시국에 직면하였다. 내선일가(內鮮一家)의 결실을 거두려면 모름지기 우리 동포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도모해야 하고, 폐하의 적자라는 자각을 주어 진정으로 황국을 위해 지성봉공의 적성(赤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東亞)의 실정 및 세계의 대세에 비추어 우리는 1920년 이래 전후 15차례에 걸친 청원의 취지를 양해하여 주시어 신속히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달성될 것을 위와 같이 청원한다.

1935년 2월

국민협회 이사장

경성부 적선동 212

김명준(金明濬) 65세

동민회 부회장

경성부 원동 135

신석린(申錫麟) 70세

|             |               |              |
|-------------|---------------|--------------|
| 대정친목회 이사    | 경성부 훈정동 66    | 석명선(石明瑄) 65세 |
| 조선대아세아협회 이사 | 경성부 팔판동 132   | 황우찬(黃祐燦) 57세 |
| 국민협회 상무원    | 경성부 서대문정 1-10 | 이능우(李能雨) 50세 |
| 대정친목회 부회장   | 경성부 인사동 228   | 전성욱(全聖旭) 59세 |
| 경성부 방면 위원   | 경성부 소격동 98    | 김형태(金衡泰) 57세 |
| 국민협회 상무원    | 경성부 창신동 131   | 석용률(石鏞律) 42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어성정 102   | 차종호(車宗鎬) 59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사직동 263   | 정규환(鄭圭煥) 61세 |
| 국민협회 상무원    | 경성부 관훈동 94    | 안승복(安承馥) 50세 |
| 국민협회 상무원    | 경성부 태평동 2-366 | 이종식(李種植) 48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무교정 80    | 방한복(方漢復) 52세 |
| 광업          | 경성부 필현동 147   | 방진성(方振聲) 58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통의동 83-1  | 오태환(吳台煥) 62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냉동 79     | 이택규(李宅珪) 57세 |
| 상업          | 경성부 송인동 61    | 김무연(金武演) 63세 |
| 상업          | 경성부 태평동 2-23  | 이도빈(李道彬) 27세 |
| 상업          | 경성부 소격동 77    | 정용덕(鄭用德) 34세 |

〈출전 : 朝鮮ニ參政權ヲ施行ノ請願書, 1935년 2월,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請關係』〉

### 13)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청원서 등 (김명준 외 41명, 1939)

1939년 3월 13일 제출 제240호

경성부 명륜정 1-36-17  
청원인 김명준(金明濬) 외 41명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 청원서

소개의원 박춘금(朴春琴),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 청원서

##### 주지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신속히 시행할 것을 바란다.

##### 이유

우리는 지난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제국의회에 전후 9차례에 걸쳐 간절히 청원하였다. 중추원에서는 이미 5회에 걸쳐 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바야흐로 조선 문화의 진전이 급속함에 따라 반도 적자의 애국지성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서 작년 조선에서는 지원병 채용제도 및 조선교육령 개정 등이 단행되었다. 이는 실로 시세의 진보에 순응하고, 장래의 징병령 및 의무교육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즈음하여 본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 우리는 충군애국의 정신이 내지 동포와 결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제 성전(聖戰) 제3년을 맞이하여 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또는 국가백년의 장계(長計)에 비추어 다시 그 실시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아 이를 청원한다.

1939년 1월

|           |                 |          |
|-----------|-----------------|----------|
| 국민협회 이사장  | 경성부 명륜정 1-36-17 | 김명준(金明濬)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원서정 135     | 신석린(申錫麟)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명륜정 1-69    | 윤갑병(尹甲炳)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권농정 109     | 이겸제(李謙濟)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필운정 174-1   | 김윤정(金潤晶)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평동정 13      | 김석태(金錫泰) |
| 국민협회 고문   | 경성부 승인정 72-7    | 김관현(金寬鉉) |
| 국민협회 상무이사 | 경성부 인사정 228     | 전성욱(全聖旭) |
| 국민협회 상무이사 | 경성부 소격정 98      | 김형태(金衡泰)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무교정 80      | 방한복(方漢復)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사직정 263     | 정규환(鄭圭煥)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적선정 133     | 이강혁(李康赫)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관훈정 904     | 안승복(安承馥)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초음정 135     | 황덕순(黃德純)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차옥정 138     | 전부일(全富一) |
| 국민협회 이사   | 경성부 태평통 2-366   | 이종식(李種植) |
| 국민협회 간사   | 경성부 서대문정 1-218  | 석용률(石鏞律) |
| 국민협회 상무원장 | 경성부 명륜정 3-141-2 | 고희준(高義駿) |

## 의견서

청원문서표 제240호

### 조선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 시행의 청원

조선 경성부 명륜정 1-36-17 김명준(金明濬) 외 41명 제출  
소개의원 박춘금(朴春琴) 외 1명

위 청원의 요지는 현재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조선민이 충분히 제국신민인 본분을 자각하고 총후(銃後)의 적성(赤誠)을 다하고 있는 때 조선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실시함은 조선과 일본이 거국일치하여 국민총동원의 성과를 거두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믿는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라는 데 있다.

중의원은 그 취지가 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의원법 제65조에 의해 별책을 송부한다.

1939년 3월 25일

중의원 의장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내각총리대신 남작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중의원 서기관장 오오키 미사오(大木操) 귀하

- 참고 -

성전(聖戰)3년, 난국 극복의 요체는 거국일치적 '인화(人和)'에 있다  
내선일체, 평등국민이라는 권리와 의무를 저라

조선 민중은 황공스럽게도 메이지대제(明治大帝)가 환발(渙發)한 조치에 따라 일시동인, 즉 폐하의 적자라는 것에서 내선인과 추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재작년 지나사변 발생 이후 2,300만 동포가 일제히 총후국민의 적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실로 폐하의 적자라는 자각에 의거한 내선일체 관념의 실현이다. 우리 국민협회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실시를 1920년 이후 19번에 걸쳐 건백과 청원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중의원이 이미 5회에 걸쳐 청원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은 것은 성대(聖代)의 원통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조선교육령 개정 및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해야 한다.

더군다나 성전3년, 일본 국민인 자는 더욱 거국일치와 봉공의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시기의 극복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제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성지(聖旨)를 받들어 내선 동포가 혼연일환(渾然一丸)이 되어 일심일체(一心一體)를 실현하고,

국가 백년의 대계를 확립할 국책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시행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1939년 1월

경성부 태평동 2-366

국민협회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국민협회가 맹운동  
이사 전부일(全富一), 황덕순(黃德純) 도쿄에 가서 중앙당국에 진정(陳情)

우리 국민협회는 이번 회원의 연서장을 준비하여 이사 전부일, 황덕순 씨를 대표로 정  
하여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실시 청원서와 건백서를 가지고 도쿄에 갔다. 진심으  
로 각 방면의 동정을 간청할 따름이다.

#### 처리요강

본 청원의 취지는 내선일체의 결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히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  
법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  
래의 이상으로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하지만 조선의 문화, 교육, 산업 상황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전 : 衆議院議員選舉法ヲ朝鮮ニ施行ノ請願書, 1939년 3월,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情關係』〉

## 14)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청원서 (전부일 외 56명, 1940)

1940년 3월 9일 제출 제960호

청원자 전부일(全富一) 외 56명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 청원서

#### 소개의원

반도 고타로(坂東幸太郎)

기시다 마사키(岸田正記)

와타나베 야스쿠니(渡邊泰邦)

박춘금(朴春琴)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나가노 도라기치(中野寅吉)

고이케 시로(小池四郎)

스나가 고우(須永好)

스기야마 겐지로(杉山元治郎)

#### 청원서

#### 주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신속히 시행할 것을 바란다.

#### 이유

우리는 지난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제국의회에 전후 10차례에 걸쳐 청원하였다. 중추원에서는 이미 6회에 걸쳐 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바야흐로 조선 문화의 진전이 급속함에 따라 지난번 조선에서는 지원병 채용제도 및 조선교육령 개정 등이 단행되었다. 또 본년은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따라 씨(氏) 제도가 제정되어 가족제도에서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장벽이 일소되었다. 반도 적자의 애국지성 또한 날로 치열해져 일본 동포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이제 성전(聖戰) 제4년을 맞이하여 더욱 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제국의 대륙정책의 전진기지인 반도의 대사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듭 그 실시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이를 청원한다.

1940년 3월 5일

|           |                     |              |
|-----------|---------------------|--------------|
| 국민협회 이사장  | 경기도 경성부 명륜정 1-36-17 | 김명준(金明濬) 71세 |
| 동민회 회장    | 경기도 경성부 원서정 135     | 신석린(申錫麟) 76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필운정 174-1   | 김윤정(金潤晶) 72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명륜정 1-69    | 윤갑병(尹甲炳) 78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평동정 13      | 김석태(金錫泰) 71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송인정 72-7    | 김관현(金寬鉉) 64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권농정 109     | 이겸제(李謙濟) 74세 |
| 국민협회 상무원장 | 경기도 경성부 명륜정 3-141-2 | 고희준(高羲駿) 63세 |
| 민중신문 부사장  | 경기도 경성부 청운정 108     | 조병상(曹秉相) 50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인사정 228     | 전성욱(全聖旭) 64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138     | 전부일(全富一) 42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소격정 98      | 김형태(金衡泰) 62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사직정 263     | 정규환(鄭圭煥) 66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적선정 133     | 이강혁(李康赫) 66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관훈정 94      | 안승복(安承馥) 54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병목정 145     | 황덕순(黃德純) 52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태평통 2-366   | 이종식(李種植) 5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평동정 13-19   | 김은제(金殷濟) 54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관철정 8       | 차만재(車萬載) 57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팔판정 132     | 황우찬(黃祐燦) 62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장사정 188     | 석명선(石明瑄) 70세 |

|           |                     |                      |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돈의정 40      | 조병렬(趙炳烈) 66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내자정 186     | 구창조(具昌祖) 59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태평통 2-305   | 김석진(金錫晉) 45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봉래정 4-10    | 김경배(金莖培) 56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화동정 35      | 박철희(朴喆熙) 64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현저정 46-841  | 조한극(趙漢克) 66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계동정 60      | 상호(尙灝) 62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원서정 86-2    | 이석희(李錫禧) 57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북미창정 69     | 송우영(宋禹榮) 62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통인정 137     | 양재규(梁在奎) 6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효자정 69-2    | 양원탁(梁元鐸) 50세         |
| 경기도회 의원   | 경기도 경성부 한강통 13      |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 66세 |
| 경기도회 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84     | 김사연(金思演) 45세         |
| 전라북도회 의원  | 전라북도 군산부 서정 49-2    | 히구치(樋口虎三) 63세        |
| 전라북도회 의원  | 전라북도 군산부 지정 4       | 와키다(脇田春次) 48세        |
| 전라남도회 부의장 | 전라남도 광주부 호남정 75     | 김신석(金信錫)             |
| 전라남도회 의원  | 전라남도 광주부 동정 5-76    | 우치야마(內山重夫)           |
| 경상남도회 의원  | 경상남도 부산부 본정 2-14    | 김동준(金東準)             |
| 경상남도회 의원  |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정 3      | 스기무라(杉村逸樓)           |
| 경상북도회 의원  | 경상북도 대구부 명치정 2-129  | 서병조(徐丙朝) 55세         |
| 경상북도회 의원  |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동부동    | 오이(大井利三郎) 63세        |
| 충청남도회 의원  | 충청남도 대전부 춘일정 3-32   | 임창수(林昌洙) 49세         |
| 충청남도회 의원  | 충청남도 대전부 대흥정 519    | 김정환(金正煥) 55세         |
| 충청북도회 의원  |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서정     | 민영은(閔泳殷) 71세         |
| 충청북도회 의원  |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서정     | 카와시매(川島由三郎) 65세      |
| 강원도회 의원   |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 157 | 박보양(朴普陽) 53세         |
| 함경남도회 의원  | 함경남도 함흥부 낙민정 43     | 김하섭(金夏涉) 53세         |
| 함경남도회 의원  | 함경남도 함흥부 대화정 3정목    | 이노우에(井上道)            |
| 함경북도회 의원  | 함경북도 성진군 성진읍 본정 120 | 와나가와(柳川種夏) 44세       |
| 함경북도회 의원  | 함경북도 성진부 성진읍 본정 18  | 나츠메(夏目十郎兵衛) 67세      |
| 황해도회 의원   |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신남천리 53 | 신원희(申元熙) 61세         |

|          |                       |                    |
|----------|-----------------------|--------------------|
| 황해도회 의원  |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동리 117-2 | 마츠모토 도시오(松本利雄) 52세 |
| 평양부회 의원  | 평안남도 평양부 남문정 40-6     | 이기찬(李基燦)           |
| 평안남도회 의원 | 평안남도 평양부 영정 5         | 구와타니(桑谷實) 54세      |
| 평안북도회 의원 | 평안북도 의주군 광서면 연상동 8    | 강이황(姜利璜) 44세       |
| 평안북도회 의원 | 평안북도 의주군              | 와다 요시오(和田義雄) 66세   |

중의원 의장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귀하

##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청원에 관한 건

### 청원 요지

최근 조선의 문화가 현저히 진전되어 지원병 제도가 설정되었고, 조선교육령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또 조선민사령의 개정 따라 가족제도도 내지와 동일하게 되었다. 성전제4년을 맞이하여 반도에서 애국지성이 날로 치열해졌다. 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한층 높이 들어올리기 위해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 정부 의견

이번 지나사변 발발 이후 반도 동포가 보여준 애국지성은 정말로 헤아릴 만하다. 지원병 제도의 실시, 교육령의 개정 및 씨 제도의 제정 등과 같은 것도 그 실정을 고려하여 실시된 것이다.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상으로서는 이의가 없지만 조선의 문화, 교육 등의 상황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

### 설명

조선통치의 방침은 일한병합의 조서(1910년) 및 조선총독부관제 개정 조서(1919년)에 명백히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일시동인의 대의에 기초하여 문화를 진전시키고 민복을 증진하여 조선과 일본의 혼연한 융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종일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조선 거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본 청원

의 정신은 통치의 이상으로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조선 시정 30여 년 동안 문화, 산업, 기타 제반에 걸쳐 현저한 진보와 개선의 족적을 남겼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여전히 내지와외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행정은 간접 또는 제한선거(도에서는 도회 의원 3분의 1은 도지사 임명, 3분의 2는 부읍회 의원 또는 면협의회원이 이를 선거하고, 부읍면회에서 선거권자 자격은 5원 이상의 납세자로 한다)를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및 일본어의 보급 등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반도민의 취학 비율은 현재 41.1%이고,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는 반도민의 약 12%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처럼 제도상 및 실질상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실시할 소지가 결여되어있다. 이 법의 시행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본 청원의 채택을 희망하지 않는 바이다.

## 의견서

청원문서표 제960호 1940년 3월 9일 제출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청원

청원자 조선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38 전부일(全富一) 외 56명

소개의원 박춘금(朴春琴) 외 8명

위 청원의 취지는 현재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조선민이 충분히 제국신민인 본분을 자각하고 충후의 적성을 다하고 있는데,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실시하는 것은 내선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두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믿어,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라는 데 있다.

중의원은 그 취지가 지당하다며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의원법 제65조에 의해 별책을 송부한다.

1940년

중의원 의장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내각총리대신 요나이 미츠마사(米內光政),  
중의원 서기관장 오오키 미사오(大木操) 귀하

〈출전 : 衆議院議員選舉法ヲ施行ノ請願書, 1940년 3월 5일 意見書,  
1940년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情關係』〉

## 15) 국민협회 본부 동정에 관한 건(1940)

조보비(朝保秘) 제106호

1940년 2월 26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재경(在京) 정무총감 전(殿)

최무성 조선부장 전(殿)

내무성 경보국장 전(殿)

### 국민협회 본부의 동정에 관한 건

경성부 태평동 2정목에 소재한 국민협회 본부에서는 지금 개최중인 제70회 제국의회에 대해 예년과 같이 참정권 실시의 청원서와 정부에 대한 건백서를 각각 제출하여 당국의 선처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번 별지와 같은 건백서 및 청원서를 작성하여 전조선 각지의 일본과 조선 도의회 의원 각 1명씩에게 찬성의 서명 날인을 촉구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에 전부 서명을 마치고 3월 초에 국민협회 이사 전부일(全富一)이 이를 들고 도쿄로 가서 마루야마(丸山) 귀족원 의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박춘금(朴春琴) 두 중의원 의원 등을 통해 의회에 제출하고 극력으로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니 참조하기 바란다.

## 건백서

정부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번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요망하여 중의원에 전후 10차례에 걸쳐 청원하였다. 다행히도 제44, 64, 67, 70, 73, 74회 제국의회에서 이를 채택했고, 또 내각에 19회에 달하는 건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본 법은 실시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다.

생각건대 지금 조선 문화 발전이 급속함에 따라 지난번에 조선지원병 채용제도 및 조선교육령 개정 등이 단행되었다. 또 올해 1월 1일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따라 씨 제도가 제정되어 가족제도에서도 내선 사이에 장벽이 일소되었다. 반도 민중의 애국적성 또한 날로 치열해져 일본 동포에 비해 전혀 차이가 없다.

이제 성전(聖戰) 제4년을 맞이하여 반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총력의 태세를 더욱 강고히 하여 흥아흥업(興亞興業)의 목적 달성에 매진해야 할 가장 긴요한 시기이다. 반도의 실정을 현명히 살펴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를 건백한다.

1940년 2월

## 청원서

### 주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신속히 시행할 것을 바란다.

### 이유

우리는 지난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제국의회에 전후 10차례에 걸쳐 청원하였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6회에 걸쳐 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은 실시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다.

지금 조선 문화의 진전이 급속함에 따라 조선에서는 지원병 채용제도 및 조선교육령 개정 등이 단행되었다. 또 올해 1월 1일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따라 씨 제도가 제정되어

가족제도에서도 일선 사이에 장벽이 일소되었다. 이에 반도 적자의 애국지성 또한 날로 치열해져 일본 동포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이제 성전 제4년을 맞이하여 더욱 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둬으로써 제국의 대륙정책의 전진기지인 반도의 대사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듭 그 실시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청원한다.

1940년 2월

- 참고 -

### 1. 국민협회 내용

경성부 태평동 2정목 36번지에 소재한 국민협회는 고(故) 민원식의 주창으로 1920년 1월 18일 결성된 조선인을 회원으로 한 단체로 취지서 및 강령 별지(생략)와 같다. 단체 결성 이후 조선인의 참정권획득운동에 주력을 쏟다가 1921년 2월 회장 민원식(閔元植)은 이 운동을 위해 도쿄에서 활동하던 중 '도쿄 스테이션 호텔'에서 유학생 양근환(梁槿煥)의 칼에 찔려 죽었다. 이를 계기로 일반의 동정을 이끌어내어 그 다음날 중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청원을 채택하였다. 일약 정부와 민간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관계자도 이 운동의 앞날에 일대광명을 얻어 이후 매 국회마다 청원 또는 건백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제44회, 제64회 및 제67회 제국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었지만, 이후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특히 일반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선인의 자각은 본 협회의 운동으로 본말이 전도되었다며 조선인으로서의 권리의 주장에 앞서 먼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일반 조선인은 본 협회의 참정권운동에 대해 앞으로 실현될 가망이 없다며 특별한 기대를 품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한두 회원 중에는 내외가 다사다난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 운동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실시된 특별지원병제도는 일반 조선인의 자각을 높여 본 운동의 진전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와 결국 금년에도 예년처럼 도쿄 명사의 원조를 얻어 본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본 협회는 경성본부 이외에 조선 내에 8개 지부를 두었다. 회원은 약 2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3천명이다. 기관지로 주간 『민중신문』(발행부수 500부)을 발행하고 있다.

## 2. 임원 명단

이사장 : 김명준(金明濬)

상무이사 : 전성욱(全聖旭), 김형태(金衡泰)

이 사 : 정규환(鄭圭煥), 안승복(安承馥), 이강혁(李康赫), 황덕순(黃德純), 전부일(全富一), 방한복(方漢復), 이종식(李種植)

고 문 : 엄준원(嚴俊源), 박춘금(朴春琴), 김석태(金錫泰), 김윤정(金潤晶), 윤갑병(尹甲炳), 이병렬(李炳烈), 신석린(申錫麟), 김관현(金寬鉉), 이겸제(李謙濟)

감 사 : 석용률(石鏞律)

상의원 : 고희준(高羲駿) 외 29명

〈출전 : 國民協會本部ノ動靜二關スル件, 1940년 2월 26일,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請關係』〉

## 16)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청원서 (김명준 외 68명, 1941)

1941년 2월 18일 제출

청원 제397호

청원자

김전명(金田明, 김명준) 외 68명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청원서

소개의원 2명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박춘금(朴春琴)



## 청원서

### 주지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을 바란다.

### 이유

우리는 지난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제국의회에 전후 11차례에 걸쳐 청원하였다. 다행스럽게 중의원에서는 이미 7회에 걸쳐 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본 법은 실시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다.

바야흐로 반도 문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난번 지원병채용제도의 실시 및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창씨제도를 실시하고,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더욱 한걸음 나아가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반도 적자의 애국지성 또한 날로 치열해져 내지 동포에 비해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는 내선일체의 결실이 드디어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성전 제5년을 맞이하여 반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정치체제에 대응하여 만민총의(萬民總意)와 협심육력(協心戮力)을 통해 대정익찬(大政翼贊)해야 하는 조선에서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것은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미력하나마 국민적 신념을 강화시켜 거국일치로 흥아성업(興亞聖業)의 완수에 매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저희들은 제국의 대륙정책의 전진기지인 반도의 대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본 법의 실시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를 청원한다.

1941년 2월 10일

|          |                     |                |
|----------|---------------------|----------------|
| 국민협회 이사장 | 경기도 경성부 명륜정 1-36-17 | 김명준(金田明) 72세   |
| 동민회 회장   | 경기도 경성부 원서정 135     | 신석린(平林麟四郎) 76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명륜정 1-69    | 윤갑병(平沼秀雄) 79세  |
| 국민협회 고문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 이병렬(清原炳烈) 68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권농동 109     | 이겸제(福田謙治) 74세  |

|           |                     |                              |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필운정 174-1   | 김윤정(淸道金次郎) 73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평동정 13      | 김석태(神林誠) 72세                 |
| 국민협회 고문   | 경기도 경성부 송인정 72-7    | 김관현(金光副臣) 65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138     | 전부일(全富一) 43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인사정 228     | 전성욱(江原聖旭) 65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91-7   | 김형태(金子衡泰) 63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사직정 263     | 정규환(茶山圭煥) 67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적선정 133     | 이강혁(森山肇三) 67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관훈정 90      | 안승복(安田承馥) 55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병목정 145     | 황덕순(黃德純) 53세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북아현정 1-123  | 안중철(廣安鍾哲)                    |
| 국민협회 이사   | 경기도 경성부 태평통 2-366   | 이종식(牧山秀) 54세                 |
| 국민협회 상의원장 |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 고희준(高島基) 64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평동정 13-19   | 김은제(金城殷濟) 55세                |
| 민중신문사 부사장 | 경기도 경성부 청운정 108     | 조병상(夏山茂) 51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관철정 8       | 차만재(安田肇) 60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4-5   | 권오용(權藤五鎔)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원남정 66-31   | 김예현(平松瑛祥)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팔판정 132     | 황우찬(平野盛輝) <sup>40)</sup> 6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돈의정 40      | 조병렬(嘉川久士) 67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장사정 188     | 석명선(石川明瑄) 71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효자정 69-2    | 양원탁(梁井元鐸) 51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내자정 186     | 구창조(綾城光助) 60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태평통 2-305   | 김석진(神林範治) 46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봉래정 4-10-59 | 김경배(大森莖培) 57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팔판정         | 박철희(竹村喆熙) 65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현저정 46-841  | 조한극(春川漢克) 67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28      | 이능우(李能雨)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견지정 38      | 암촌정의(岩村正義) 5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낙원정 3       | 금근광웅(金近光雄) 50세               |

40) 平野盛輝의 '輝'는 '暉'의 오기로 보임.

|           |                      |                      |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필운정 90       | 주영환(本城秀通) 60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계동정 60       | 상호(尙川灝吉) 6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홍파정 4-1      | 이주연(和永高明)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71-79   | 신희련(平山熙崇)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화서정 86       | 이석희(武島忠勇) 58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사련정 34       | 전재익(菊池淸) 58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북미창정 69      | 송우영(松山榮) 63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통인정 144      | 양재규(梁川在奎) 64세        |
| 국민협회 상의원  | 경기도 경성부 창신정 626      | 평소영작(平沼英作) 34세       |
| 황해도회 의원   |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신남천리 53  | 신원희(申元熙) 59세         |
| 황해도회 의원   | 황해도 서흥군 화전면 신막 198   | 모리모토 기쿠오(森本喜久男) 47세  |
| 평양부회 부의장  | 평안남도 평양부 남문정 40-6    | 이기찬(安城基) 55세         |
| 평안남도회 의원  | 평안남도 평양부 앵정 51       | 구 와타니(桑谷實) 54세       |
| 평안북도회 의원  | 평안북도 의주군 광서면 연상동 8   | 강이황(岡利晁) 44세         |
| 평안북도회 의원  |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육정 400  | 홍치업(南陽致業) 51세        |
| 충청북도회 부회장 |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서정 65   | 민영은(閔泳殷) 71세         |
| 충청북도회 의원  |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내목정 3   | 안동정(安東正) 60세         |
| 충청남도회 의원  | 충청남도 대전부 대흥정 519     | 김정환(金田正煥) 56세        |
| 충청남도회 의원  |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소화정 406 | 배영춘(武本榮一) 47세        |
| 전라남도회 부의장 | 전라남도 광주부 호남정 75      | 김신석(金信錫) 45세         |
| 전라남도회 의원  | 전라남도 광주부 동정 5-76     | 우치야마(內山重夫) 51세       |
| 전라북도회 의원  | 전라북도 전주부 고사정 409     | 구영린(久永麟) 64세         |
| 전라북도회 의원  | 전라북도 전주부 대정정 6-15    | 원병희(元寸炳喜) 57세        |
| 경상남도회 의원  | 경상남도 부산부 본정 2-14     | 김동준(金東準) 55세         |
| 경상남도회 의원  | 경상남도 김해군             | 김경진(金子慶鎭) 47세        |
| 경상북도회 부의장 | 경상북도 대구부 명치정 2-129   | 서병조(大峯丙朝) 55세        |
| 경상북도회 의원  | 경상북도 대구부 봉산정 23      | 신옥(申鈺)               |
| 함경남도회 의원  | 함경남도 함흥부 낙민정 43      | 김하섭(金本夏涉) 54세        |
| 함경남도회 의원  | 함경남도 함흥부 주길정 65      | 유태설(邦本泰高)            |
| 경기도회 의원   |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84      | 김사연(金思演) 46세         |
| 경기도회 의원   | 경기도 경성부 한강동 13       |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 67세 |
| 함경북도회 의원  | 함경북도 청진군 나남본정 89     | 미카미(三上新) 66세         |

|          |                          |               |
|----------|--------------------------|---------------|
| 함경북도회 의원 | 함경북도 청진부 본정 18           | 김정석(金山韶能) 48세 |
| 강원도회 의원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乃村面) 도관리 444 | 오츠카(大塚源七) 58세 |
| 강원도회 의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57      | 박보양(江原基陽) 54세 |

중의원 의장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귀하

## 의견서

청원문서표 제397호

1941년 2월 18일 제출(呈出)

###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청원

청원자 조선 경성부 명륜정 1-36-17 금전명(金田明, 김명준) 외 68명  
 소개의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군 외 1명

위 청원의 취지는 현재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조선민이 충분히 제국신민인 본분을 자각하고 충후의 적성을 다하는 이때 조선에는 이미 지원병채용제도, 조선민사령 개정에 따른 창씨제도, 교육제도의 개정 등이 실시되었다. 이때 더 나아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실시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이 거국일치와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두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믿어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라는 데 있다.

중의원은 그 취지가 지당하다며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의원법 제65조에 의해 별책을 송부한다.

1941년 3월 25일

중의원 의장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중의원 서기관장 오오키 미사오(大木操) 귀하

〈출전 : 朝鮮二衆議院議員選舉法ヲ施行ノ請願書, 1941년 2월 10일,  
 意見書 1941년 3월 25일,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請關係』〉

## 17) 국민협회의 참정권 청원운동 정황(1938)

국민협회 일파에 의해 제창된 참정권운동은 고(故) 민원식이 1921년 2월 6일 운동을 위해 도쿄에 갔다가 스테이션 호텔에서 유학생 양근환(梁槿煥)의 칼에 찔려, 그 다음날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그의 청원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운동은 일약 정부와 민간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국민협회 일파도 이 운동의 앞날에 일대광명을 얻어 이후 매 국회마다 청원 또는 당로(當路)에 건백서를 제출하는 등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아무런 반향이 없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세인에게 잊혀지고 있을 무렵 지난번 조선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종래 자문기관이 결의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는 곧 참정권을 부여하는 전제가 아닌지 설왕설래하였다. 한편 1932년 2월 박춘금(朴春琴)은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1932년 12월에는 박영효(朴泳孝) 후작이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되었다. 박춘금 중의원 의원이 의회에서 참정권 부여에 관한 연설 등에 자극을 받아 다시 조선인 지식인 사이에 참정권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또 구 한국 장교들도 참정권 부여의 전제로 조선인에게 1년 지원병제도의 실시를 1934년 이후 누누이 당국에 요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국민협회는 참정권운동이 의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은 필경 조선 민중의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전 조선 각지의 유지에게 찬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1935년 말까지 진정서에 조인한 사람만도 2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건백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자 준비 중이었지만, 마침 1936년 2월 도쿄에서 226사건이 발발해서 제출시기를 놓쳤다. 이후 1936년도 제국의회 개최에 즈음해서 진정서와 건백서만을 제출했고, 1937년도 제70회 제국의회가 열리자 국민협회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던 참정권부여청원서 및 찬성조인서를 국민협회 이사 전부일(全富一)이 가지고 도쿄로 가서 귀족원 의원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와 중의원 의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박춘금 등의 원조를 받아 관계방면에 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 1936년 11월 중추원 참의 한규복(韓圭復), 경기도 도회 의원 조병상(曹秉相) 등을 중심으로 한 경성 거주 지식인 33명이 모여 협의한 결과, 일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발기인회를 만들어 일대운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조선인 병역제도 실시요망 문제는 군부와 기타 관계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표명으로 인해 이를 중지하였다. 이후 시국의 영향과 당국의 영단(英斷)으로 조선교육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조선인특별지원병제도가 금년 4월 마침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위의 대제도의 실시가 발표되자, 일부 조선인 식자 사이에는 당국이 사변하에서 조선인의 적성(赤誠)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여 이는 국민의 의무인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과정이자 조선인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참정권도 빨리 부여 받을 전제로 삼았다. 국민협회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운동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제국은 초비상시국에 직면하여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일치단결하여 외적에 대처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대대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인의 반감을 사고 당국의 심증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제7회 제국의회 개최 때 전년도와 같이 국민협회 이사 전부일을 도쿄에 파견하여 관계방면의 원조를 개시하여 위의 청원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출전 : 國民協會ノ參政權請願運動卹況, 「支那事變關係 - 各種團體統後ノ活動狀況」, 『治安情況』, 1938년 9월, 경기도〉

## 18)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에 관한 청원 연혁

| 제국의회 | 연호   | 제출자               | 경과           |   |     | 비고 |
|------|------|-------------------|--------------|---|-----|----|
|      |      |                   | 중의원          |   | 귀족원 |    |
|      |      |                   | 청원위원회        | 본회의   |     |    |
| 42   | 1919 | 민원식(閔元植) 외 105명   | 미완료          |   |     | 해산 |
| 43   | 1920 |                   | 정부참고 송부      |   |     |    |
| 44   | 1920 | 민원식(閔元植) 외 3,226명 | 특별보고 (제384호) | 1921년 3월 25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45   | 1921 | 하부(土生彰) 외 2명      | 정부참고 송부      |   |     |    |
| 52   | 1925 | 오가키(大垣丈夫) 외 56명   | 정부참고 송부      |   |     |    |
| 64   | 1933 | 김명준(金明濬) 외        | 특별보고         | 1933년 3월 18일 의원회                              |     |    |

|    |      |                       |                 |  |  |  |
|----|------|-----------------------|-----------------|--|--|--|
|    |      | 13명                   | (제189호)         | 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67 | 1934 | 한인경(韓仁敬) 외<br>120명    | 특별보고<br>(제250호) | 1935년 3월 14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      | 김명준(金明濬) 외<br>1,214명  | 특별보고<br>(제304호) | 제250호 의결 결과, 의원에 반드시 회부되지 않아도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여 1935년 3월 25일 정부에 송부 |  |  |
| 70 | 1936 | 김명준(金明濬) 외<br>24,625명 | 특별보고<br>(제208호) | 1937년 3월 29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73 | 1937 | 김명준(金明濬) 외<br>28명     | 특별보고<br>(제279호) | 1938년 3월 25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74 | 1938 | 김명준(金明濬) 외<br>28명     | 특별보고<br>(제188호) | 1939년 3월 25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 75 | 1940 | 전부일(全富一) 외<br>56명     | 특별보고<br>(제765호) | 1940년 3월 24일 의원회의에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의결하여 당일 정부에 송부                  |  |  |

〈출전 : 朝鮮二衆議院議員選舉法施行二關スル請願ノ沿革, 1941년,  
『朝鮮人關係雜件, 建言及陳請關係』〉

## 2. 사상과 논리

### 1) 고희준(高義駿), 신일본주의(新日本主義)를 고조함(1)

고희준

우리 인생에 밤낮 경영하여 노동하며 힘쓰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 목적 여하를 물으면 사람마다 각각 그 용모의 상이함과 같이 설(說)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제 성현의 가르침을 듣건대, 유교는 사해동포를 말하고 불교는 무아평등을 말하고 기독교는 인류형제를 말하였으니, 이를 종합하건대, 요점은 인류가 서로 사랑하여 공동행복을 꾀한다 함에 귀착하도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하라면 인류는 신불(神佛)의 완전함과 같이 완전한 인격을 획득하여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일본주의(新日本主義)의 궁극적인 이상적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과연 이 이상에 어떠한 방침을 따르면 도달하겠는가 하면, 각종의 견해가 있어 용이하게 하나로 정할바 아니다. 국가주의, 혹은 개인주의를 주창하고 국가주의 중에도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있으며, 개인주의 중에도 자주주의(自主主義), 평등주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아시아면로주의를 운운함도 있어 일일이 열거하면 나는 거의 그 대응의 번잡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거의 모두 위에서 서술함과 같이 인류 공동 행복증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무엇이 가장 시세(時勢)의 진운(進運)을 잘 따르고 인심의 귀추에 적응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논함에 불과할 것이다.

옛날에 로마는 국가주의에 따르고 희랍은 개인주의에 따라 각기 특장(特長)을 발휘하고 문물제도상 뛰어난 자가 적지 아니하였으나, 한편에 치우침이 많은 결점을 보여 마침내 국가와 함께 멸망하였다. 만약 그 국가주의가 극단에 치우치면 전제적(專制的) 성격으로 흘러 국가는 존재하나,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고 권위가 없고 자유가 없고 평등이 없어 개인은 국가에 예속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여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고 드디어 국가도 개인과 함께 피폐함에 이를 것이다. 또 그 개인주의의 극단에 치달으면 이기주의(利己主義), 아리주의(我利主義), 자연주의(自然主義), 본능주의(本能主義), 파훼주의(破毀主義), 허무주의(虛無主義),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로 변하여 마침내 개인과 함께 국가까지도 멸망함에 이를지니, 개개인은 국가 성립의 근본요소요, 국가는 개인의 존재를 보호하는 유일의 기관인즉, 개인을 이탈하여 국가가 없고 국가를 이탈하



여 개인이 없을지니, 그 이해와 그 이상의 서로 일치함이 올바르고 결코 □패(□悖)함이 불가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바이다. 그런데 이 양 주의가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sup>41)</sup>과 같이 각기 극단에 치달아 본체(本体)를 달관치 못하는 유견(謬見)<sup>42)</sup>이요, 따라서 그 해독(害毒)이 흐르고 있는 것이 실로 가공(可恐)할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구미(歐米)에는 이 양자의 배후에서 엄연히 이를 초월하여 ‘조화통어이사(調和統御使)<sup>43)</sup>’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즉 기독교(基督教)라. 이 기독교의 위력은 능히 이 양 사상이 극단에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그 장단점을 골라 보완하여 오늘날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양 사상이 다만 형식적 서구화에 머물고 그 근원에 있어서는 이를 ‘조화롭게 통제할 것(調和統御使者)’이 없음은 실로 국가 앞날을 위하여 큰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지니, 무릇 우리의 복리는 법정(法政)에 기댈 것이요, 법정은 도덕에, 도덕은 우수한 종교에 그 근원을 갖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바랄 수 없을지라. 이 근원의 배양(培養)에는 두말할 것 없이 종교가 있으니, 우리는 강력히 기독교에 한한다 함이 아니라, 그 어떠한 종교이든지 능히 이 양 주의를 ‘조화통어이사’ 하여 개인 및 국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 될 것이 있으면 환영해 마지않을 바이라.

그러나 우리 제국에는 다행으로 고래(古來)로부터 무사도(武士道)라는 것이 있어, 그 열렬한 충효사상, 억강부약(抑強扶弱)<sup>44)</sup>의 의협심(義俠心), 그 엄치를 알고 정조(貞操)를 존중하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미풍은 이 무사도에 근거하지 않음이 없으니, 우리나라 삼천 년의 역사에 수많은 충신, 의사, 효자, 열부(烈婦)의 활약이 찬란함은 모두 이 무사도의 권화(權化)와 화신(化身) 아닌 것이 없도다. 횡정소남<sup>45)</sup>가(橫井小楠歌)에 말하길, 제생만물(帝生萬物) 영사지량(靈使之亮) 천공소이지취대신비육합중(天功所以旨趣大神飛六合中)과 같은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천명을 알고 인생의 가치직분을 가르쳐 신인합일(神人合一)의 묘경(妙境)을 음미함에 이르는 신혼(神魂)의 웅대하고 사상의 활달함에 우리는 육약혈용(肉躍血湧)<sup>46)</sup>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고, 다시 그는 말하길, 부국(富國)에 머물지 아니하고 강병(強兵)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의(大義)를 사해에 펼치고자 한다 하였으니, 오호(嗚呼)라! 얼마나 고결한 사상이며, 얼마나 원대한 포부인가. 일본의 오늘이

41) 얼음과 숯이 서로 다르다는 뜻.

42) 그릇된 생각이라는 뜻.

43) ‘願使’는 턱으로 부린다는 뜻으로, 남을 마음대로 부림을 이름.

44)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뜻함.

45) 에도 막부 말기 정치가, 사상가(1809~1869). 쇠국체제·막번체제를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공공(公共)과 교역(交易)의 입장에서 모색하였다.

46) 힘이 넘치고, 피가 끓는다는 뜻.

있음이 우연이 아니요, 이 사람이 있음에 연유한 것이라고 간절히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 무사도의 권화사상(權化思想)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신일본주의는 다시 근거를 여기에 두지 아니함이 불가하고, 다만 시세의 진운에 더욱 수반하여 세계적으로 더욱 높게, 더욱 넓게, 더욱 깊게 실현함을 확실히 기대할 따름이다.

우리가 깊이 세태를 관찰하건대 무엇보다도 인류의 일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니, 사기(詐欺), 횡포(橫暴), 불의(不義), 패덕(敗德), 쟁투(爭套), 음란(淫亂), 살상(殺傷) 등의 죄악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세(勢)가 실로 알아보기 어려우니 개인 대 개인에는 상당히 정의인도(正義人道)를 행하는 자가 있으나, 국가 대 국가에는 전연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무력한 도리(道理)도 유력한 무리(無理)에는 이길 수 없는 현황이라. 소위 완력이 즉 정의와 같은 모습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개개인이 전부 각기 신(神)의 현현(顯現)을 발휘하여 그 영능(靈能)을 각성함이 아니면 이 동물성(動物性)의 수욕(獸慾)은 타파할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각 국가 전체가 확청(廓淸)<sup>47)</sup>되어 개화하지 않으면 이 자연계의 법칙인 약육강식은 면치 못할 것이요, 금일의 문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함과 같은 이상(理想)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아직 앞길이 요원(遙遠)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종교의 필요를 주창함은 앞과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힘의 복음(福音)을 믿는 자이니, 그 일부의 종교가, 또는 도학자(道學者) 무리와 같이 이 어두운 면을 보지 아니하고 군비폐지(軍備廢止)를 운운함과 같은 것은 실로 무가치한 논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편안히 가급적 군비확장을 계획할 필요를 주장하는 바로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인류공동의 적인 죄악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박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후에 항상 정의인도를 가진 정신이 능히 물질을 지배통어하여 그 선용의 방도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래의 제국주의(帝國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는 그 포부에 있어서는 우리와 별로 다름이 없다 할지나, 점점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는 폐해가 있고 자칫 하면 즉 국가적 영예심에 매몰되어, 본래의 정신을 몰각하는 우려가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출전 : 新日本主義를 高調함(1), 『每日申報』, 1916년 10월 6일〉

47) 지지분하고 더러운 물건이나 폐단 따위를 없애서 깨끗하게 함을 뜻함.

## 2) 민원식(閔元植), 신일본주의 선전

고양군수 민원식(閔元植) 씨는 시국에 대하여 신일본주의를 선전한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더라.

우리 조선의 최근—삼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음—사정은 세간이 주지하는 바와 같거니와, 식자(識者) 중 혹자는 세계사조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말하고, 또 혹자는 인심이 어리석어 세태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라 하니, 두 가지의 견해에 대하여 혹은 가히 긍정할 것이요, 혹은 가히 부정할 것이라.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지 않음이 없고, 인심동요의 원인이 또한 원래 복잡한 때문이라. 그 또한 민심을 바로잡아 구원할 방도는 인정과 도리를 다하여 이를 이해하고 타일러 화해시킴으로써 각성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이 나, 비록 불초(不肖)하나 하늘의 계시(啓示)를 좇아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는 이유로다.

민원식

### 신일본주의

우리는 생활의 안고(安固)를 요구하나니, 이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을 희망하기 때문이 아니요, 국가와 사회의 강녕(康寧)을 보전하고 융창(隆昌)을 도모함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개인생활의 안고를 확보함에 있기 때문이라. 동시에 우리의 생활을 확충케 하지 않으면 못할지라. 인류의 본능은 진화를 욕구하나니, 현대문명의 원천 또한 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생활의 안고는 쉽게 인심을 이완시켜 잡념이 교생(交生)하고 특히 인류의 천부적인 본능, 즉 왕성한 진화욕도 오히려 감퇴시켜 그 생활을 성글게 하는 것이 있는지라. 우리 반도의 근래 모습을 돌아보건대 인심의 황탕(荒蕩)이 진실로 우려할 만하니, 생활의 안고를 차츰 획득함에 따라 인심이 이완하여 망상을 용납할 간극이 생겨 진화욕이 잘못된 길에 빠짐을 볼 수 있는지라. 우리는 우리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개인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인심을 긴장시켜 진화욕을 정도(正道)로 회복시킬 필요를 믿노니, 생활의 충실은 각인의 자각에서 출발하고 자각에 의

해 진보하고 자각에 의해 성취되느니라. 하등의 용의(用意)가 없고 하등의 성산(成算)이 없는 조선 독립과 같은 것은 모(某) 표방하는 ‘독립’이 반도민의 이해를 초월하여 스스로 존귀하다는 착각을 일으켜 흡사 미개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복을 얻으리라는 미신과 같이 솔직히 조선 민족의 광영이라. 이를 위해서 우리 반도의 동포는 비록 어떠한 노력과 장차 또 심대한 희생을 사양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개인생활을 완전히 하여 집단생활과 협조하는 것으로써 국가최고의 목적이라 하는 현대사상과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필경 시대맹(時代盲)과 무자각(無自覺)을 표백한 망동에 불과하니 인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당연한 바라. 우리 동포는 올바른 이치를 깨우치고 망상을 제거하며 공론(空論)을 배제하여 각자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향상시켜서 사회의 진운(進運)에 바탕을 쌓을지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독립의 가치를 경시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는 각각 국가에 의하여 보장을 받나니, 우리 조선 민족은 실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생활의 안고를 보장하는 바가 되도다.<sup>48)</sup> 그러나 정부의 조선 통치 방침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조선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고 문화를 증진코자 하는 의사—단절한 것—가 있는지라. 오직 민(民)□□□□□□□□□□ 충족할 수 없다 할지나, 조선 사천 년의 역사는 신정(新政) 거의 10년에 민권을 요구함이 오히려 과분함을 생각케 하는 것이 없지 않도다. 요컨대 우리 동포는 현재 일개 독립국의 국민인 사실에 대하여 과다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음을 알 것이다. 그 또한 구한국으로써 오늘에 존속하면 이에 대하여 충성을 바쳐 국운의 융창과 국위의 선양을 도모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병합은 이미 과거의 사실을 완성하였도다. 어떠한 이론상의 전색(詮索)<sup>49)</sup>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키 어려울 뿐 아니라, 공평한 열강의 비판은 독립운동은 조선 민족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생활적 개선의 요구를 충족케 할 유일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택함이 아니요, 그들이 현재 안주하는 위치에서 진보와 발달을 위하여 불(不)□□□□□□□□□□ 영(榮)과 자아가 긍정할 경지에 대한 동경에 불과하다 한 그 진상을 능히 파악하였다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은 도저히 행복과 광영을 우리 동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물며 병합으로 인하여 대일본제국은 조선과 일본 민족 공동의 국가를 이루었으니, 이 사실은 단순히 정치상의 사상으로써 바라볼 바가 아니다.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합체라 칭할 만한 일이요, 일한병합의 기회를 만든 것은 양국 국력의 상위(相違)와 정치상의 이유에 있고 따라서 양 민족의 합체와 동시에 양자에 대한 국가제도에 차등(差等)을 말하였으나, 이것은 합체의 근본조건이 아니요, 정치상 가

48) 이하 방점은 원문 그대로임.

49) 조사하여 구함이라는 뜻.

설적 장애에 대한 잠정적 제도이다. 조선 민족이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민권을 신장함은 국가의 본의에 합당한 것이라 단언할 것이요, 지금에 조선 민족이 불평을 품을 이유가 없도다. 실로 물질적 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여러 종류의 사정(事情) 가운데 교통의 발달과 경제관계의 밀접함 등의 사실은 대마해협(對馬海峽)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일본 양국이 대립하여 동종동문(同種同文)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그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고수하여, 한쪽은 아마토민족(大和民族)<sup>50)</sup>이라 칭하고 다른 쪽은 조선 민족이라 칭하여 상호 국가의 이해를 위하여 항쟁하다가 양 민족의 화합에 의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감소를 허용하지 않으니, 필경 양 민족의 합체는 지상에 생겨난 하늘의 뜻에 적합한 것이라 말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존중하고 민족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은 인의(人義)에 순응하기 때문인데 조선 민족이 역사를 과장하고 스스로 긍지(矜持)가 높아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동포의 휴척(休戚)을 생각지 아니함과 같음은 소의(小義)에 빠져 대의(大義)에 패태(悖戾)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일본 민족의 처지로 뒤집어 보건대, 인구국토(民口國土)에 충일(充溢)하여 그 증식의 비율은 거의 세계에서 으뜸에 속하고 장래 국익을 생각게 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6천 만을 넘지 않고 국민의 원기(元氣)가 어느 정도 왕성할지라도 이웃 나라 중국의 4억에 비하면 대략 근근이 15퍼센트에 불과하다. 국가의 부강은 단연코 강토의 광협(廣狹) 내지, 인민의 다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닐지나 일본제국이 반도의 땅과 함께 1천 7백만 민의 충성을 함께 획득하는 여부는 국가의 위용에 대대한 차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이치라. 이를 획득하는 때 현재 동양의 맹주인 실력을 가진 제국은 형용(形容)과 실질(實質)이 상응하여 더욱 위엄이 증가하고 특히 국시 신장이 더욱 심상(尋常)치 아니할지라. 그런즉 양 민족의 합체와 동화공존은 본시(本是) 하늘의 뜻이요, 흡사 또 시세에 조응하는 것이니, 조선과 일본 민족은 이에 이 이치를 잘 깨우쳐 일선병합, 즉 양 민족의 합체인 사실을 존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지라. 우리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따라 신일본주의라 칭하고 이 주장을 선명(宣明)하노니, 조선 민족은 대일본제국 국민이라. 그러므로 합리적 또 합리적 노력으로써 민권의 신장을 기대함은 무방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조선 독립을 계획함과 같은 것은 대의에 어긋나고 명분에 반할 뿐 아니라, 1천 7백만 민(民)의 복지를 저해하는 폭거에 불과하다. 조선 민족은 모름지기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서하고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활

50) 19세기 말에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역사적, 정치적,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아이누민족, 유큐민족, 니브히족 등의 일본에 사는 다른 민족들, 조선인과 대만의 타이완인, 고산족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을 확충하여 문명국민이 됨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기할지이다.

아마토민족은 조선 민족의 의사, 감정을 존중하여 제국신민인 조선 민족이 향상을 위주하는 정당한 각 방면의 노력에 대하여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 지당함을 말하노라.

〈출전 : 新日本主義 宣傳, 『毎日申報』, 1919년 10월 19일〉

### 3) 조선의 난국 대응책, 통치의 근본 결함, 부산에서 하마다(濱田) 대의사(代議士) 담(談)

국민당(國民黨) 총무대의(總務代議)－하마다 구니마쓰(濱田國松) 씨는 9일 조선에 입항하는 연락선 고려환(高麗丸)으로 부산에 와서, 역 앞 명호여관(鳴戶旅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근래 조선인의 동요에 대해서 조정(朝廷)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 대책방침의 연구와 고려를 주저하나 아직 일반에게 그 실상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모양이다. 나도 이제 여러분의 담화(談話)에 와서 그 의외로 악화됨에 놀란 터라. 이른바 독립사상이라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민본주의, 민족자결 등의 목소리에 자극된 것은 물론이나,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유행한 것도 아니다.

그 근원은 테라우치(寺內) 총독시대로부터 잠재하였던 것이나, 다만 그 무단(武斷)정책에 압박되어 대두(擡頭)의 기회가 보였던 중 사이토(齋藤) 총독이 되어 문화정책의 이름하에 헌병제도 폐지를 행하고, 위압(威壓)의 손을 풀려고 하자, 홀연 표면에 나타나 결국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니, 조선통치방침에는 근본이 착오된 것이 많다. 특히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조선으로 하여금 독립회계를 하게 함은 심히 우려가 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한 나라를 병합한 이상 20년, 30년의 단시일에 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은 망단(忘斷)이 심한 것이니, 식민지의 통치 개발에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마땅히 저 영국이 인도에서 행함과 같이 법칙 정책으로서 다스리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 있다. 더욱이 이 근본책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데, 즉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민 문제에 대해 멕시코 및 남미 등에서 이를 행하라 주장함과 같이, 국가가 징병제도처럼 의무

적으로 일본 1정(一町), 1촌(一村)에서 수명씩의 청년을 불러들여 3년이나 5년 교대로 조선에 이주하게 하면서 도회집중주의(都會集中主義)를 방지하여 특별한 보호와 이권(利權)을 주어 조선 내 각 지방의 개간(開墾)에 종사하고, 각지에 일본 마을을 건설하게 하면 여기서 자기의 안체지(安體地)를 발견하여 조선 내에 머무는 자도 증가할 것이요.

일본인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면 나중에는 불온(不穩)한 분자(分子)의 함부로 날뛰게 허락할 여지가 없음을 이르리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 제2의 니콜라예프스크 사건<sup>51)</sup>을 연상케 한 봄 사건의 이면에는 러시아 과격파(過激派)의 선전이 매우 유력하다. 즉 노동(勞農)정부는 중국인 및 조선인의 준비병으로서 모스크바 연대라 하는 것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모스크바 수비의 일부를 맡겼는데, 지금 그들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동양에 파견하여 중국, 조선, 일본 등에 성대한 과격주의의 선전을 시도하려고 속속 북선(北鮮) 방면에 잠입하게 한 것이니, 지금에 한 사건을 야기하게 한 유력한 원인은 모국에서 남모르게 활동하는 공적을 이루었도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에는 매우 철저히 행동을 집행하고, 이미 북경(北京) 정부 및 동삼성 순회사(東三省 巡回使) 장작림(張作霖) 등의 이해를 얻어 간도(間島) 점령 같은 것을 결행함에 이를 것이요, 이제부터 음모(陰謀) 조선인에 대하여 더욱 단속을 엄히 하고, 근저로부터 그 초멸(剿滅)을 도모할 계획이라 하나, 음모(陰謀) 조선인 등은 이와 같은 연극으로 일본의 압박의 마수를 더하게 하여, 미국, 혹은 열국(列國)의 간섭을 대하려는 태도도 없지 아니하니, 이것을 단절함에 제하여 무명의 장수를 취(取)하지 아니하도록 크게 경계하는 마음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래도 한편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모국과 크게 싸우지 아니하지 못하고 입장에 있다. 요컨대 현하 일본의 정치는 모두 □무 형내(型內)에 끼었으니, 이 국면을 전개하여 새로운 방면을 개척하고자 함에는 지금으로는 권모술수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여 내각을 조직하게 하여 자유자재로 수완을 발휘하게 함만 같지 못하다. 현재 일본의 정치가 중에서 이러한 인물을 구하고자 하면, 먼저 산본권병위백(山本權兵衛伯)이 바로 지금에 적당하다 할런지.

〈출전 : 朝鮮의 難局 對應策 『時事新聞』, 1920년 10월 10일〉

51)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과정에서 1920년 1월 영사 이하 니콜라예프스크의 일본 거주민이 몰살당한 사건.

#### 4) 김상희(金尙會), 조선통치에 관한 사건(1~3)

##### 제1장 서론

현하 조야(朝野)에 조선을 우려하며 조선을 논하는 선비가 매우 많다 하나 의론이 구구하여 아직 귀일(歸一)하는 바가 없고 민중이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그 따를 바를 헤매는 이유는 일반이 조선 문제를 취급하는 데 그 표면의 사상에만 집착한바 되어 그 이면에 가려진 근본문제에 닿는 바가 적음에 연유함일 뿐이다. 우리가 현하의 조선 문제를 논하려 하면 우선 일한병합(日韓併合)의 진상으로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노라. 일한병합은 세계의 대세와 극동의 역사적 지리적 관계상으로 당연히 결행될 것이 결행된 것은 식자(識者)가 아니더라도 명료한 사실인즉, 법령에 더욱 강구할 필요가 없다 할지나 이에 주의할 문제는 그 방법이 전혀 인위(人爲)를 가하지 아니한 자연의 세(勢)에만 의하여 행한 바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라 하노라.

식자의 다수는 병합이 자연의 형세상 당연히 결행될 것이 결행된 것이므로 가부를 논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방법까지도 자연의 형세대로 결정된 것으로 믿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병합 그것은 자연의 형세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이를 행한 방법은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이면에는 어떠한 정신이 잠재한 것으로 믿노라.

회고컨대 당시 한국은 밖으로는 강한 이웃 나라의 압박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안으로는 봉당의 쟁투가 항상 끊이지 않아 도저히 자립으로 생존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와 순치상의(脣齒相倚)<sup>52)</sup>의 관계에 있는 일본은 그 국방 및 대륙 발전상에 비상한 협위와 필요를 느끼는 것 외에 인문의 발달, 거리(距離)의 단축은 이미 소국(小國)의 분립, 할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고로 동근동문(同根同文)의 일한 양국이 결합될 것은 필연한 운명인즉 병합의 결행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행함에 있어 인문(人文)의 고저, 빈부의 현격을 초월하여 그 간에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양자가 혼연일가를 이루는 형식을 취한 것은 자연의 형세 이외에 인위적 방법을 가미함이니 우리는 이를 일컬어 병합의 진수를 조성하는 대정신의 발로라 하노라.

그런즉 병합 이후의 조선 통치는 반드시 이 정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야만 유종의 미를 획득하겠거늘, 이 판국에 테라우치(寺內) 총독은 피치자의 정도에 적합한 시설(施設)을 행함이 정치의 원칙이란 이유에서 병합의 정신에 기초한 시정(施政)을 행하고자 하니 민

52) 입술과 이가 같이 서로 기댐. 순망치한(脣亡齒寒)과 같은 뜻.



도(民度)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 봉착하여 이를 주저하고, 민도에 적응한 시설을 행하고자 하여서는 병합의 정신에 어긋남을 우려하여 드디어 민도에도 적합하고 병합의 정신에도 부합할 정책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도리어 민도에도 부적합하며 병합의 정신에도 위태로운 소위 선의(善意)에 악정(惡政)인 불철저한 결과에 이르렀도다.

일반론자들은 1919년 3월 1일의 만세소요에 대하여 그 원인을 1차 세계대전 후에 격변된 사상계의 여파와 윌슨 씨가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의 반향에 의한 것이라고 많이들 말하나 이것들은 다만 그 발발의 기회를 준 연(緣)을 만들었을 뿐이요, 그 원인은 이미 병합 후의 십여 년간에 양성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듯하도다. 즉 병합 후 우리 조선 동포 일반은 그 실생활이 병합 당시 혹은 그 후의 표면의 형식이나 성명에 의하여 기대한 것과 너무 차이가 큼에 절망하여 암암리에 불평불만을 품고 또 재일동포는 조선인의 너무 빈약하며 너무 저급한 점만 보고 전반적으로는 이만하여도 족하리라는 일종의 모멸심과 유단심(油斷心)을 생기게 하여 부지불식간에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결과에 빠져, 일방에서는 압박이라고 절규하며 일방에서는 교만이라고 매리(罵詈)<sup>53)</sup>하여 날로 양자의 구거(溝渠)<sup>54)</sup>를 깊게 함에 이르렀도다.

마음 속 고뇌와 번민이 있을 때에 식자(識者), 달인(達人)이 아닌 보통 사람은 흔히 소용없는 수소애탄(愁訴哀歎)<sup>55)</sup>을 중복하여 이를 치유하고자 하며 이로써 면하고자 하나니, 수소애탄은 원언매리(怨言罵詈)<sup>56)</sup>로 변하기 쉬우며 원언매리는 왕왕 인간 동물 본성의 발작적 충동을 조성하는 기회가 많다. 이와 같이 딜레마 정책에 고뇌, 번민하는 우리 조선동포는 다만 만세소리로써 그 고뇌, 번민을 호소하려 하다가 드디어 반항으로 변하며 난폭으로 변하였나니, 독립의 불가능함은 명백히 아는 바요 또 소동(騷動)하면 소동하는 대로 우리에게 불리함도 명백히 아는 바라. 다만 흥분의 여파와 호랑이를 탄 듯한 형세가 갑자기 멈추기 어려움을 어찌할까. 만세소요에 의하여 어두침침하던 검은 구름이 아직 그 그림자를 거두지 아니함에 대하여 위정당국자와 우리 동포는 이를 우려하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에 대한 최상의 선후책을 강구하며 금후생활에 대한 최선의 방향과 목표를 구함이 현재 가장 급한 최대 문제라 하노라.

---

53) 꾸짖고 욕함.

54) 도량을 뜻함.

55) 자기 사정을 애처롭게 호소하고, 슬프게 탄식함.

56) 원망하는 말로 심하게 욕함.

## 제2장 조선의 현상

소요<sup>57)</sup> 이래로 민족 일반 전체에 퍼져 있는 사상과 요구를 대별하면 (1) 독립파(獨立派) (2) 속령자치파(屬領自治派) (3) 내지연장파(內地延長派)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리라.

### 1. 독립파

독립을 요구하며 독립을 희망하는 자 중에 대내적 타성에 의한 자와 대외적 자극에 의한 자의 두 종류가 있으니,

#### 1)

대내적 타성에 의한 자는 병합 당시로부터 이를 반대하여 지금에 이른 자로서 적어도 그 주의주장으로 십여 년을 일관한 자이니 지금 그 실력과 대세의 여하는 하등 물을 바가 아니로다. 자기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일단 그 뇌리에 응결(凝結)된 반항적 감정은 종시소각(終是消却)되지 않을 것이요, 다년간 그 환경에 고집된 반대적 행동은 용이하게 고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전연 불가능한 것이요, 그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불리한 것임을 조금이라도 명료하게 각성하여도 정세상(情勢上) 도저히 이를 중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표방과 행동으로 일반에게 그 존재가 알려져 유랑표박(流浪漂泊)하나마 이에 의하여 그 생활을 유지하며 오뇌비참(懊惱悲慘)하나마 이에 의하여 그 정신을 위적(慰籍)하나니 지금 그 주장을 포기하며 그 행동을 변경(變改)함은 즉 그들의 정신상 자살과 육체상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리라 하겠다. 따라서 비상한 경우와 비상한 기연(機緣)에 봉착하지 않으면 이 일파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그들의 생존 중에는 간헐적으로 의연히 계속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하노라.

생각건대 그들이 병합에 절대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당국에 철저하게 반항행동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정몽주(鄭夢周), 성삼문(成三問)으로 자임하여 그러한 바도 아니요, 그들이 노령(露嶺)으로 달아나며 샌프란시스코(桑港)로 달아남은 반드시 백이·숙제(伯夷·叔齊)를 모범하여 그러한 바도 아니로다. 회고건대 그들의 대부분은 옛날에 동서(東西), 노소(老少) 벼슬자리를 구하는 데 몰두하며 매관매직의 달콤한 독주에 흠뻑 취하여 2천

---

57) 3·1만세운동을 뜻함.

만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기름을 짜며 삼천리강토의 산(山)을 헐벗게 하고 윤택함을 고갈시키는 망리나찰(魍魎羅刹)과 같은 약탈적 특권계급에게 일대 반기를 들고자 분기(奮起)한 우리 동포의 유수(有數)한 청년이었다. 수백 년 이래 부패부란(腐敗腐爛)이 극도에 달한 반도(半島) 전 사회에 일대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처한바 사지(死地), 그 받은바 고뇌를 벗어나기 어려움을 자각한 우리 동포의 유위청년(有爲青年)들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비상수단과 비상변혁을 경유치 아니하지 못하겠음도 선각(先覺)하였도다. 극동의 대세를 관찰하여 일본에 접근하며, 일본을 신뢰하여 병합의 기운을 촉진함은 결코 일진회일파에게 양보할 바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병합의 정신에는 찬성하였으나 그 실행방법, 즉 병합 후의 제반조치에 대하여 불평이 있었도다. 그들은 병합에 의하여 그 조선 이래의 사지비경(死地悲境)을 탈각하고 반도 대지에 일대 신생면(新生面)을 전개할 기회가 도래함을 신뢰하며 희망하였다.

상하(上下) 2천여 년의 일대 현안을 해결하였다는 데라우치(寺內) 총독도 망리나찰(魍魎羅刹)과 같은 특권계급자에 의하여 얽힌 정실(精實)을 절단(截斷)하는 능력은 없었든지, 영작(榮爵)은 가보계도(家譜系圖)를 표준으로 하여 주천(奏薦)하며 시정(施政)은 부유노후(腐儒老朽)<sup>58</sup>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였도다. 희망은 절망이 되고 신뢰는 원한이 되었나니, 자포자기에 빠짐을 다만 그들의 과실에만 돌리기 어려우리로다. 일시의 혈기에 일탈한 그들은 이미 그 방향이 어긋났으니 이전에 동포를 위하여 분투하던 열혈은 금일에 조국을 저주하는 독혈이 되었으며, 이전에 앞날을 명찰(明察)하던 총명은 금일에 시세에 미혹된 어리석음으로 변하였도다. 현 당국 제공(諸公)이 10년 만 일찍 왔다면, 데라우치 총독의 시정방침에 현 당국자의 정신이 조금만 있었으면, 우리 동포의 다수로 하여금 이러한 경우에 이르게 함이 없었을 것이로다. 슬프다! 엇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지 못함을 어찌할까. 위정(爲政) 제공은 이를 잘 살피 금후의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하며 동포 제위는 이에 경계하여 금후의 진로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 동포가 왕왕 유언비어에 현혹되며 일부 책사(策士)의 선동에 이끌려 자기의 유망한 전도를 그르칠 뿐 아니라, 일반의 복리증진에 일대 장애를 주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위정당국자에 대하여는 전세기의 유물인 소수 특수계급을 시정의 상대자로 한 재래의 폐풍(弊風)을 철저히 타파함을 희망해 마지않는 바로다.

58) '부유(腐儒)'는 생각이 낡고 완고하여 쓸모없는 선비를 뜻함. 노후(老朽)는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함을 뜻함.

2)

대외적 자극에 의한 자는 병합에 대한 반대보다도 오히려 환경의 자극에 의하여 발발한 자이다. 그들은 그들이 기치(其置)한 바가 된 경우와 생활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오뇌고민(懊惱苦悶)을 거듭하므로 어떠한 힘에 의뢰하여 이것에 반항하며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로부터 이탈하고자 애태우던 때에 마침 세계의 개조, 민족자결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힘에 의뢰하여 반항함을 만족시키고 이 방법에 의하여 이탈함을 얻으리라고 곧 믿었다. 또한 윌슨 씨를 절대 권력자의 구세주로 추앙하며 민족자결주의를 만고불역(萬古不易)의 진리로 숭상하여 그들의 외치는 한마디는 쉽게 윌슨 씨의 동정과 원조를 얻으며 윌슨 씨의 세력은 충분히 그들의 목적을 도달케 하리라고 신뢰하였으며,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외치며 행동하는 것이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믿는 민족자결주의 적용의 기운(氣運)과 시기를 촉진하는 최상방법으로 신뢰하였도다.

생각건대 병합 후 그 부패하고 문란한 사회, 고갈(枯渴)한 반도 강토에 일대 청결을 행하였으며 일대 장식(粧飾)을 하게 하여 민생은 도탄에서 구출되며 강산은 생기를 띠어 일반복리(一般福利)의 증진과 일반생활의 향상이 도저히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님은 명료한 바다. 일부 독립주창자도 결코 이를 부인하는 바가 아니나 인간의 향상을 꾀하며 영달(榮達)을 도모하려는 욕망은 결코 일정한 한도에 이르러 그치는 것이 아니오. 따라서 과거에 처하였던 바의 경우와 생활을 회상하여 현재의 경우와 생활에 만족을 느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그리함은 우리도 희망치 아니하는 바로다. 병합에 의하여 전개된 신생면을 본 우리 동포 청년은 그 향상과 영달을 계도(計圖)하는 열정이 옛날의 몇 배이며 그 복리와 환락을 획득하려 하는 욕망이 옛날의 몇 배였다. 소수특권계급에게 정치정권에는 가히 참여하게 하며 열강 이웃 나라로부터 감수하던 약소국민의 모욕은 가히 면할 줄로 확신하였도다. 그러나 정권에 참여함은 고사하고 입헌치하의 국민을 토인(土人)이라 칭하였으며 혼연일가(渾然一家)의 토지에는 식민지의 명사를 씌웠도다. 망국비애의 ㅁ점은 점점 그 색채를 농후히 하며 진취기상의 도정은 날로 그 미공 주공(做工)이 해이해져 초려(焦慮)는 자포가 되고 자포는 허망으로 변하였도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그 천부(天賦)의 본능에서 용출하는 정치적 욕망은 무엇보다도 중하며 무엇보다도 강하니, 무엇으로 이를 대신하며 무엇으로 이를 억누르리오. 프랑스(佛國)의 혁명, 러시아(露國)의 혁명이 이를 증명하는 바로다. 테라우치 총독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무시하였는지 다만 면포(緬包)로써 이에 대하여 군도(軍刀)로써 이를 제압하려 하였다. 왜성(倭城) 관사(官舍)<sup>59)</sup>의 선의에는 만민이 감읍하고 남산 꼭대기의

호령(號令)에는 전국이 습복(摺伏)할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으나, 민중은 그 선의에 대하여 자각이 생김과 동시에 그 호령에 대한 반항은 정비례하여 그 자각에 의하여 증가되는 정치적 관념에는 그 압박과 반항에 의하여 착각이 생겼도다. 유언비어는 능히 이를 혼미하게 하며 풍성학려(風聲鶴唳)<sup>60)</sup>는 쉽게 그것을 움직여 자기를 살피며 환경을 관찰할 여유를 불허하고 즉시에 만세일성으로써 자주독립을 완성하며 백만미병(百萬米兵)을 초래할 줄로 생각하고 믿었도다. 그러나 독립은 결코 차함첩지(借銜牒紙)<sup>61)</sup>가 아니니 일매(一枚)의 진정서로 어찌 이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월슨 씨가 관성제군(關聖帝君)이 아니거늘 어찌 만세의 주문으로 이를 초래하리오.

민족자결주의는 요컨대 1차 세계대전 후의 전승국이 전패국의 지도를 고치는 구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바이니 그 내용의 모순, 당착, 조악함은 다소 깊이 생각하면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자연 명료하리하다. 민족자결은 안으로는 자기 민족의 각 인격적 개성의 자결을 요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타 민족의 동일한 자결을 갖추지 아니하면 실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또 하등 가치가 없으리니, 일국가 혹은 일민족 내에서 기회와 경우에 따라 혹은 전제자(專制者)가 되며 혹은 굴종자(屈從者)가 되는 민족, 혹은 국민으로는 도저히 타민족의 자결을 존중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타 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자결을 요구함도 전연 무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재 인간으로 자기의 지혜와 학식과 기술과 체력과 부력(富力)과 기회와 경우가 자기 민족 중에 어떠한 자보다 우수할 때에 그 생활경쟁에 처하여 과연 타인의 세력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또 한 민족이 가진 무력(武力)과 경제와 문화가 동일한 지역 내 혹은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타 지역의 타 민족이 가진 것보다 우수함을 자각하고 자신할 때, 과연 타 민족의 자결에 대하여 침해할 의사와 행동이 발생하지 아니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지니 민족자결주의의 창작자 월슨 씨의 본국인 미국에만 국한하여도 노동운동이 이를 증명하며 흑인의 참상과 필리핀(比島)의 반항이 이를 증명하는 바이니 어찌 다른 예를 구할 필요가 있으리오. 독립을 얻은 폴란드(波蘭)가 즉시 소비에트(勞農露國)에 침입함은 즉 자기의 독립을

59) 남산에 위치한 통감부 건물을 왜성대(倭城臺)라고 불렀는데, ‘한일병합’ 후 통감부 건물에 그대로 총독부가 들어섰다. 왜성 관사는 바로 조선총독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60)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 즉 의구심이 많다는 뜻이다. 『진서(晉書)』, 「사현전(謝玄傳)」에서 유래한 말로, “부견(苻堅)이 군사 백 만을 거느리고 진을 벌여 비수(肥水)에 육박하자 사현은 군사 8천 명으로 하여금 물을 건너 들이치니 부견의 군사가 무너져서 갑옷을 벗어던지고 밤에 달아나는데 바람 소리나 학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모두 왕사(王師)가 몰려온다고 여겼다.” 하였다.

61) ‘차함(借銜)’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직함만 가지는 일을 뜻함. ‘첩지(牒紙)’는 관리 임명장이나 공문을 뜻함.

언은 민족자결의 윤리를 부인함이요. 또 폴란드의 독립을 원조한 영국과 프랑스가 이 행동을 묵인함은 당초에 폴란드를 원조함이 민족자결의 윤리를 신봉함에 기인한 바가 아니오. 다만 독일의 영토를 감축(減縮)하여 국력을 미약하게 하고자 함에 기인함을 증명하는 바이니, 민족자결주의는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주창함은 전패 국을 곤궁케 하고자 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민족자결주의의 소위 민족이라 함은 즉 혈액, 언어, 풍습, 지리 및 역사를 공통으로 소유한 인민을 총칭함이니, 그 중에 역사를 공통으로 소유함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요, 과거의 기억은 장래의 이상(理想)을 결정하나니 역사를 소유한다 함은 즉 각 개인의 기억의 내용이 동일함을 말함이요, 따라서 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래의 이상이 동일함을 말함이라. 우리 인류가 금일의 진화를 이루며 금일의 문화를 유지함은 반드시 과거의 노력과 분투에 의한 결과이니, 원시적 인류가 결코 금일의 문화를 유지하며 금일의 생활을 영위하며 금일의 사회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일이라. 과거의 우리는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며, 그 생식을 계도(計圖)하기 위하여 혈액을 혼합하며, 그 생활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역을 점령하며, 그 생활을 편리케 하기 위하여 언어를 제작하며,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며, 그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를 창작하는 동시에 교통기관의 발명은 그 생활내용을 점점 확대하여 일집단과 일집단이 합하며, 일지역과 일지역이 연결되어 문화가 발생하며 경제를 증진하며 진화를 촉구하여 금일의 문명, 금일의 인류를 산출하였나니, 즉 인류의 발달과 문화의 향상은 공간적 거리의 단축에 비례하여 증진됨이요. 따라서 우리의 과거, 즉 역사의 내용이 공간적 거리 단축에 의하여 인격의 향상과 문화의 증진을 계도함이 분명한 이상에는 기억에 의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이상과 희망은 반드시 공간적 거리 단축을 계도하여 인격의 향상과 문화의 증진을 계도함에 노력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현재의 이상과 노력이 장래의 역사인 이상에는 현재의 이민족(異民族)이 장래에 반드시 공동한 역사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로다.

현재 민족자결주의가 현재의 각 민족이 개개로 분립하여 금후에는 영구히 각 민족 간의 침범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은, 즉 이후에는 이민족과의 혼합 또는 합체를 영구히 불허함을 의미함이요. 따라서 현재의 일민족이 가진 혈액, 언어, 풍속, 습관, 역사를 영구히 그 민족에만 국한한 혈액, 언어, 풍속, 습관, 역사로 존재케 하고자 함이니, 혈액을 국한함은 우리 인류의 진화하는 기초조건의 행사를 봉쇄(封閉)함이요, 언어를 국한함은 우리 인류의 문화향상의 도구의 개화를 저지함이요, 풍속, 습관을 국한함은 우리 인류의 생활을 미화하는 것을 억제함이요, 역사를 국한함은 우리 인류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이

상을 전연 제거함이라도. 인류의 진화, 인류의 향상, 인류의 미화를 저지한 후에 장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까지 제거하면 우리는 과연 생활의 가치가 있으며, 생명이 존재한 의의가 있다 할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일순간까지 희망과 이상을 가지나니 우리의 희망과 이상을 제거함은 즉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노라.

월슨 씨가 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한 동기가 이와 같으며 그 내용의 모순당착(矛盾撞着)과 조악(粗惡)함이 이와 같거늘, 이 사람을 절대구세주로 받들며 이 주의를 만고불역의 진리로 숭상하여 무용한 운동에 대대한 희생만 치렀으니 어찌 개탄할 바가 아니리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가 가진 바의 역량과 처한 바의 경우를 자각하는 동시에 환경의 현실과 내용을 바로 보아 이를 활용하며 바로 씀으로써 이상과 희망을 결정하여 그 수확을 획득함에 노력할 것이요, 결코 막연한 의뢰나 상상에 사로잡혀 무리한 희망을 품으며 성과 없는 운동을 일으키는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로다.

우리는 만세소요 이전의 우리 동포의 현상이 조만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일전개혁(一展開策)을 강구하지 아니치 못함에 있었음은 시인하는 바나, 그 방법과 수단이 너무 교격(矯激)함에 지나쳐 대세에 어두운 지방 민중과 혈기에 충만한 일부 청년으로 하여금 그 유망한 전도를 희생케 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그 주동자가 이에 이르게 된 그 사정에 대하여는 동정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다수 동포를 몰아 함정에 빠지게 한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결코 그 죄를 면할 수 없으리라 하노라. 더구나 그 때의 선동자로 교묘한 수단이나 요행으로 법망(法網)을 피하거나, 혹은 단기형으로 방면된 후 일면으로는 위정당국자에게 아부하여 그 일신의 안고를 도모하며 일면으로는 대언장어(大言壯語)로 혈기의 청년과 일부민중을 격동하여 소위 편복행위(蝙蝠行爲)<sup>62)</sup>로 위정당국자와 일반 민중을 조롱하여 그 일신의 안고와 허영을 도모함에만 급급하는 무주의(無主義), 무정견자(無定見者)에 대하여는 실로 우리 동포를 간접으로 살해하는 자라 하여도 가할 지니 이 어찌 개탄할 바 아니리오.

〈이상 (1)〉

## 2. 속령자치파(屬領自治派)

자치요구자도 또 두 종류로 구별하겠으니, 하나는 일시적 방편으로 이를 요구하는 자요, 하나는 영구적 최선방법으로 이를 요구하는 자라.

62) 편복(蝙蝠)은 박쥐를 말함. 박쥐같은 행동을 뜻함.

1)

일시적 방편으로 이를 요구하는 자는 희망과 사상이 독립요구자와 대략 동일하되, 다만 시세를 살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현재의 조선의 역량, 환경의 추세로는 도저히 조선의 독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제삼자의 원조에 의하여 이를 실현하기도 불가능하겠으며, 설혹 어떠한 기회, 어떠한 원조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역량, 현재의 정도로는 자연히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민족의 기반(羈絆)<sup>63)</sup> 하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할 뿐, 지금 소동(騷動)하면 소동하는 대로 자기에게 불이익함도 자각하는 고로 일시 숨어 인내하여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하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실케 하며, 일반의 시설을 정돈(整頓)하여 일체의 준비가 완성된 때, 혹은 어떠한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에 맹렬히 독립을 결행하고자 하는 자이니, 즉 단계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자이로다.

2)

영구적 방법으로써 속령(屬領) 자치를 요구하는 자의 주장은 조선 민족과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의 융화는 영구히 바랄 수 없는 바인 고로 양자가 분리 각립함이 지당하다. 조선의 자력으로만은 그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또 일본은 조선의 거취(去就)여하에 따라 그 국방상에 안위가 결정되며 대륙발전상에 사활이 갈리므로 국운을 걸고 조선을 해방하는 일은 만무하다. 오히려 조선은 일본의 주권 하에서 속령자치를 행하는 것이 조선은 조선의 역량이 상당한 경우에 만족하여 그다지 불평불만이 없겠으며 일본은 제삼자에게 조선에 대한 용훼(容喙)<sup>64)</sup>를 얻는 바가 없으며 그 국방상 및 대륙발전상에 별단의 협위(脅威)와 저해를 느끼는 것이 없을 터이니 현재와 같이 항상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이 방법에 의하여 양자 간에 관계를 일신하여 양자의 장래에 대한 사명을 확정함이 양 민족의 행복이겠으며, 또 영원히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책이라고 사유한다. 이는 예로부터 조선에 이주한 야마토민족의 일부가 우리 조선 민족에 대하여 취한 행위와 병합 후 위정당국자가 조선에 시행한 통치방책에 의하여 그간에 발생한 현실과 그 간에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주장하는 바라.

진실로 야마토민족의 민족성이 재래(在來)로 조선에 이주한 야마토민족 중의 혹자가 가진 성질과 취한 행위, 그것에 불과하며, 또 위정당국자의 조선시정방책이 종래와 같이

63) 굴레, 굴레를 씌운다는 뜻.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함을 이르는 말.

64) 간섭, 말참견을 하다라는 뜻.



불철저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진대, 혹은 이 방법이 적합할지도 추측하기 어렵도다. 그러나 양 민족이 고원한 이상과 영구한 행복을 목표로 하여 결행한 일대 사업을 그 중 일부 모리배의 호가호위(狐假虎威)의 비열한 행위로 받은 사소한 감정과 얼마간 두세 위정자가 취한 정책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영향으로써 만연히 그 감정을 민족 전체에게 옮기며 조급하게 그 정책이 영구불변하리라고 단정함은 너무 경솔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우리 인류는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가장 냉정한 이성과 가장 진지한 태도로써 이를 강구하여 그 취할 바의 수단과 그 나아갈 바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요, 결코 일시적 감정이나 만연한 억측에 사로잡혀 무모한 수단과 저돌적 행동으로 이를 계획하며 이를 단정지 못할 바이니, 하물며 유사 이래에 일찍이 없었던 일대변혁을 하고 있는 금일에 있으리오. 우리는 모름지기 활안(活眼)을 열어 높은 곳에서 우리 생활의 앞날을 명찰(明察)하며 흉량(胸量)을 넓히고 환경의 사상(事象)을 두루 넓게 보아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성의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며, 환경의 사중(事衆)은 미화선도할 것이요, 결코 비굴함에 흐르고 비관에 빠져 스스로 우리의 생활과 전도(前途)를 협소하게 하며 암흑하게 하지 말지로다. 요(堯)임금에게 도척(盜妬)<sup>65</sup>과 석가(釋伽)에게 제파(提婆)<sup>66</sup>는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면하지 못할 사실인 이상에는 조선 민족의 전부가 모두 선량하며, 현명치 못할 것도 면치 못할 사실이요. 야마토민족의 전부가 모두 선량하며, 현명치 못할 것도 면치 못할 사실이니, 지금에 야마토민족의 전부가 모두 선량하고 현명하기를 기대함은 너무 아득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또 그 일부의 불량불현(不良不賢)함을 보고 실망낙담(失望落膽)함은 너무 자약(自弱)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곧음이 여기에 있고 구부러짐이 저기에 있으면, 정정당당히 이를 탄(彈)하며, 이를 공격하여 그 반성을 촉구하며, 그 개선(改悛)을 압박하여 부득이할지니, 하등 주저할 바가 있으리오. 인류로써 이치(理)가 있는 바와 의(義)가 있는 바에 공명치 아니하는 것 없으니 무사도(武士道)를 민족성의 정화(精華)로 자임하는 야마토민족의 다수는 결코 다만 동민족이라는 이유로써 정의에 반패(反悖)되는 자를 응원비호(應援庇護)하는 도리(道理)에 어긋난 행위는 불가능할 터이로다. 아아! 우리 조선 민족이 한양 전도(全都) 이래로 어제의 명(明), 오늘의 청(淸)의 사대주의를 처세의 요결(要訣)로 인정하며, 동서노소(東西老少)의 암투사쟁(暗鬪私爭)을 평생의 사업으로 정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른 민족, 혹

65) 중국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도척이라는 사람이 기르던 개가 착한 임금으로 이름난 요임금을 보고 짖었다는 고사성어 '척구폐요(跣狗吠堯)'에서 유래한 비유로서, 못된 것에 물들면 착한 사람을 도리어 못된 것으로 알고 텀빔을 이르는 말.

66) 제파달다(提婆達多). 석가의 중형제로 석가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인물.

은 특권 계급자에게 압박과 능학(凌虐)을 받은 공포에 불과하며, 이상은 왜옥루실(矮屋陋室)의 구차유안(苟且愉安)<sup>67)</sup>을 구하는 일시적인 안정에 그쳐 버렸다. 그 결과, 용맹정진하는 의지는 적고, 자겹(自慙), 비굴(卑屈)한 성질만 많아 백의를 입고 죽림(竹笠)을 쓰지 아니한 인간을 보면 명부(冥府)의 사자(使者)<sup>68)</sup>를 마주침과 같이 생각하고 전쟁 중의 적을 대함과 같이 인정하여 일면으로 두려워하며 일면으로 의심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흠결을 갖게 되었다. 다른 민족에 대한 그 공포심은 점점 우리의 발전을 군축(蹙縮)하며, 우리의 생활을 협소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승승장구의 경모(輕侮)<sup>69)</sup>의 염(念)을 발생하기 용이하며, 다른 민족에 대한 그 시의심(猜疑心)은 왕왕 우리로 하여금 편견과 오해를 발생하게 하여 상대방의 악감을 불러 일으켜, 상대방의 반발을 일어나게 하는 기회가 많다 하리로다. 우리가 상대방의 불량한 점을 들며 어질지 못한 바를 책(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억측과 편견을 철거하고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을 접하며, 상대방을 보아 엄정한 비판과 당연한 이유하에 이를 논하며, 이를 단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코 틀림없다 말하지 못할 것이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성케 하며, 자각케 함은 도저히 불가능하리니, 오늘에 그 일부의 흠점을 들어 그 전체에 미치게 하며, 그 일부의 행위를 들어 그 전체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 인식한다 하면, 이는 오히려 우리의 편견임을 자명하는 바요, 우리의 몽매함을 자증(自証)하는 바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의 최대 결점인 자겹성(自慙性)과 벽견습(癖見習)을 타파하고, 가장 진지한 태도로 인격을 향상하며, 실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가장 냉정한 판단으로 환경을 명찰하며, 장래를 투시하여 우리의 복리와 발전을 계도할 최상의 방법, 가장 빠른 지름길을 구득(求得)할 것이요,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 혈기에 충일하여 그 전진의 침로(針路)<sup>70)</sup>를 오인하는 바 없을지로다. 이미 우리의 실력이 충실하게 되며, 지위가 향상되면 이와 동시에 상대방 일부의 불량한 현상은 자연 그 흔적을 없애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과 동등, 혹은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할 시기가 도래하리니, 오히려 자겹, 자굴하여 공포하며 만약 싫어하여 다만 위축되보로 한 구석에 칩거하고자 함과, 맹렬히 자진하여 그 가진 힘과 정성으로 동일한 진로에 대립 병행하여 동등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자 노력함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무엇이 희망할 바이며, 무엇이 의의가 있는 바이며, 무엇이 복리를 가져올 바이리오. 속령 자치를 요구하는

67) 작고 허름한 집에서 구차하게 안정된 삶을 구한다는 뜻.

68) 저승사자를 뜻함.

69) 남을 하찮게 보아 업신여기거나 모욕함.

70)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뜻함.

정신이 만일 아마토민족의 일부에 대한 악감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하면, 이는 결코 현자가 취할 수단이 아니라 하노라.

위정자(爲政者)가 신인(神人)이 아닌 이상에는 그 시정방침과 행정수단에 다소 결점이 있으며 착오가 있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이니, 이를 감시하며 편달하여 그 시행방침과 행정제도가 가급적 우리의 이상에 부합하며, 우리의 희망에 부합하도록 노력함은 재야에 있는 자의 책임이라. 국정의 운용과 민중의 복리는 치자와 피치자가 진정으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를 계도함으로써 그 적절한 처분을 얻으며, 그 증진을 기할 것이요, 결코 치자나 피치자의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운의 성쇠(盛衰)와 민중의 고락(苦樂)에 대한 책임공로는 치자와 피치자가 공통으로 부담하고 거둬야 당연할 바로다. 하물며 일반 민의를 가장 중시하는 근대 정치조직체하에 있으리오. 병합 후 조선 통치의 임무를 담당하는 위정자의 시정방침과 행정방법에 결점이 있음에 대하여 위정당국자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재야자(在野者)의 일반도 그 일부 책임을 분담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병합 후 위정당국자가 일반 민중의 의사표시와 희망신달(希望伸達)의 기회와 기관을 전연 없애고 우리 민중에게 위정에 대한 한 마디의 비판과 희망을 시험함을 불허한 관계는 있다 할지나,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얻으며, 이를 이룰 것이 있으리오. 누워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대함이 너무 먼 일이 아니면 너무 과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자기의 권리와 복리를 얻는 것에 노력하며 분투치 아니하고, 다만 위정자의 호의(好意)에만 의하여 이를 얻을 자가 있겠는가. 유례(類例)를 멀리 구할 필요가 없으니, 아마토민족이 그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얼마나 분투하는가? 메이지(明治) 이래 역사의 거의 전부를 민간(民間) 대 번벌정치가(藩閥政治家)의 투쟁사로 채웠으며, 오늘날의 의정 단상(檀像)의 의사 대부분은 여당 대 재야당의 논전으로 점하나니, 우리 조선동포는 종래 그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어떠한 분투를 시도하였는가? 조선 통치에 결점이 있으며 불만이 있으면, 당당히 이의 제거를 청구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최상의 노력과 분투를 계속하여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다하며, 기다리는 시기가 경과한 후에 그 성의를 분별하며, 그 고과(考課)<sup>71)</sup>를 판단하여 지금 이후로 취할 바의 방향을 정할 것이요. 오히려 상상억측계(像想臆測係)에 사로잡혀 자포자기에 빠지며, 조급하게 단려조분(短慮燥忿)<sup>72)</sup>에 그르쳐서 교각살우(矯角殺牛)<sup>73)</sup>의 우를 범함이 없도록

71) 군인이나 공무원, 회사원, 학생 따위의 근무 성적, 태도, 능력 따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뜻함.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다. 현재 조선 통치가 현 위정당국자의 부임 이래로 각 방면에 걸쳐 개량미화된 점이 적지 아니하며, 오히려 또 지금에도 그 개량진보를 계도함에 다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바가 아닌가. 다만 야마토민족의 일부에 대한 감정과 두세 위정자의 정책에 다소 결점이 있다고 하여 자치를 요구함은 그 근거가 너무 박약하며 따라서 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리다.

원래 속령 자치는 그 지방의 실력이 우세하여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한 동시에, 지역의 현격(懸隔)이나 풍토가 특수하여 그 본토와 동일한 제도와 법률하에 행동함에는 큰 불편과 고통을 느끼니, 분리 각립함은 본토에 대한 종래의 역사적 관계와 국제 간에 있는 이해타산상 이를 피하고자 함에 의하여 지금 나타난 하나의 기형적 정체에 불과하나니, 즉 영국의 캐나다(加奈陀)와 호주(濠洲)가 이것이라. 지금 일본의 주권하에 조선의 속령자치를 요구하는 자는 과연 조선의 현 상황으로 타산해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성산과 자신이 있는가. 만일 속령자치에 대하여 충분한 성산과 자신이 있다 하면, 독립에 대하여도 충분한 성산과 자신이 있을 터이니, 속령자치를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 필히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을 고염(苦厭)하여 이와 분리각립을 희망함에 있는 이상에는 나아가 순연한 독립을 요구함이 의당하겠거늘 반대로 속령자치를 요구함은 또한 무슨 까닭이뇨. 독립이 만연한 의뢰와 막연한 상상에 의하여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 것과 같이, 자치가 실력을 도외시하는 공론과 추세에 역행하는 감정에 의하여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겠으며, 따라서 이 운동의 결과는 역시 만세소요와 같이 무용한 희생을 같이할 수밖에 하등 소득이 없으리니, 어찌 우리 동포의 행복을 기대하는 자가 취할 바이리오.

대저 사회의 조직과 국가의 제도는 우리 생활을 유지 향상하며, 복리를 획득증근(獲得增進)하는 수단방법이나니, 지금 우리가 독립을 희망하며, 자치를 요구하며, 내선혼일을 주장함은 그 목적이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 즉 독립을 구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향상, 미화되며, 속령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향상 미화되며, 내선혼일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생활이 향상, 미화되는 그 결과에 있을 것이요, 결코 독립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며, 자치 그것이 최종목적이 아니며, 내선혼일 그것이 최종목적이 아닌 것이다. 그런즉 현재 우리의 실력과 사정이 독립을 구득하여 가히 우리의 생활을 향상하며, 복리를 증진할 성산(成算)과 자신이 있으면 독립을 계획함이 가할 것이요, 자치에 의해서 이

72) 짧게 생각하고 조급히 화를 낸.

73)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조그만 일에 신경 쓰다 큰일을 그르친다는 의미의 한자성어.

를 획득할 성산과 자신이 있으면, 자치를 요구함이 가할 것이요, 일선혼일에 의하여 이를 달성할 성산과 자신이 있으면, 일선혼일에 노력함이 가할 것이니,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실력과 사정이 이를 허용하며, 장래 우리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될 것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함이 가할 것이라. 어찌 그 방법인 제국의 미명에 현혹되어 그 최종의 목적을 망각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자치론자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 긴절한 경제 방면에 대하여 어떠한 성산(成算)과 자신이 있는가, 병합 후 조선이 중앙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액은 연 평균 1천만 원에 가까우며, 현재 일본에서 차입한 국채액은 1억 6천 7백여 만 원에 달하였으되, 조선총독 당국자가 가장 고심초려하는 바는 재정문제요, 우리 동포가 가장 고뇌, 빈민하는 바는 과세부담이 과중한 점이니, 지금 조선 자체의 경제력에만 의하여 조선을 경영함이 과연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며, 조선의 문화를 향상하며, 우리의 부담을 감소케 함을 얻을까. 의심컨대 산업은 쇠퇴하며, 문화는 퇴보하며, 우리의 부담(負擔)은 배가 증대할 뿐 아니라, 피차간에는 종주(宗主)의 굴레 관계가 성립되어 그 일부 불현자가 우리 동포를 대하는 접촉방법은 일찍이 우리가 보호시대에 경험했던 악몽에 복귀하리니, 어찌 깊이 생각할 바가 아니리오.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으며 차별적 멸시와 경제적 가난을 얻는 것보다는 기득한바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보존하며, 기정한바 그들과 동일할 권리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부(富)로는 우리의 빈(貧)을 기르며, 상대방의 강(強)으로는 우리의 약(弱)을 보완하여 우리의 실력을 충실히 하며, 우리의 생활을 안고하게 하여, 코르시카 섬 출신의 나폴레옹(奈破崙)이 프랑스(佛國)를 장악 지배한 역사적 증거와 웨일스 출신의 로이드 조지가 대영(大英)을 지도, 지휘한 현실을 이상과 목적으로 삼아 전진함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믿노라.

### 3. 내지연장파(內地延長派)

이를 주장하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병합의 정신을 이해하며, 세계의 대세를 관찰하여 양 민족이 당연히 귀착할 점을 명확히 깨달은 자이니, 현 중앙정부와 현 조선위정당국이 이 주의에 의하여 조선 통치를 책정하며, 또 유식계급에 이 주의에 의하여 그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 적지 않음은 양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축하하는 바이나, 그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다소 불철저한 점이 있다 아니치 못 하리니,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노라.

일한합병에 의하여 한국 영토는 일본의 영토가 되고, 한국민은 일본 국민이 되었으며, 또 그 영토의 관계는 프랑스(佛國)의 '마다가스카르', 미국(米國)의 필리핀(比律賓)과 같

은 바가 아니라. 일위수(一葦水)<sup>74)</sup>를 사이로 한 접속지(接續地)요, 그 민중은 본디 동근 동종(同根同種)으로 언어의 기원이 같으며, 문자의 쓰임이 같으며, 풍교(風敎)의 도가 하나인 바라, 한번 두드려 동근 환(丸)을 지을 소질이 있나니, 가히 토지는 일본 재래 영토의 연장지로 변작(變作)하며, 민중은 일본 재래 인민에 동화하여 조선과 일본을 동일한 시설과 균등한 취급하에 설치하고자 함이 이 주의자의 주창하는 바요, 희망하는 바라.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는 바는 이 이상(理想)이 과연 그 희망하는 바와 같이 실현되며, 수행될까 하는 점이니, 토지는 일편(一片)의 범령발포와 한 번의 제도변경에 의하여 바로 일본의 연장지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으나, 인민에 대하여는 완전한 동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리니, 진실로 조선인이 일본인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확신이 있는 이상이 아니면 그 이상의 실현은 기대치 못할 것이며 그 희망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리다. 그러나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동화되며, 일본인이 조선인을 동화할 가능성과 확신이 있을까? 혹자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은 과거에 동근동종이었으나, 지금 다시 복고(復古)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양 민족 간에는 우열강약의 차이가 있으니, 그 열약자는 자연 우강자에게 동화될 운명이 있다 하나, 내 소견에 의하면, 양 민족은 각 분리 할거함이 이미 오래되어 금일에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특이한 문화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간에 자연 풍습의 다름과 성정의 다름이 없지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 지금 단순히 동근동종인 사증(史証)에만 의하여 복고의 소질이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 단정함은 고려할 문제이요, 또 양자의 우열강약의 관계로 이를 논하건대 원시시대에는 각 종족의 우열은 바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발생시켜 열패자는 우월자에게 전적인 복종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열패자는 그 가진 바의 '토템'과 '미쓰'<sup>75)</sup>를 가성적(可成的) 우자가 가진 바와 동일, 또는 일치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보존하며, 또는 제삼종족에 대하여 우자의 지위를 점하는 필요조건이 되므로 열패자가 우열자에게 동화되는 것이 매우 용이하며, 또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 말할 것이나, 복잡한 현대의 사회조직과 진보된 금일의 인간심리로 이 관계가 용이하게 성립되리라 함은 의문이라. 원시적 심리의 '미쓰'는 금일에는 문화적 의식으로 진보되었으며, 원시적 종족이 우월한 신을 가진다고 믿는 관념은 금일에는 우수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믿는 민족성이 되었으니, 우자에게 전적인 복종을 바치기 위하여 자기의 풍습과 성정을 전연 없애기에는 각자 자기관념이 너무 발달되었으며, 우자의 문화에 일치하기 위하여 자기의 문화를 전연 버리기에는 각 종족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의식이 근

74) 조각배를 띄울 만한 크기의 바다를 일컫음.

75) 'myth'(신화, 神話)를 뜻함.

거가 깊게 되었고. 즉 동양 민족은 구라파의 문화도 우수하지만, 동양문화도 그 자체 문화로 믿는 바이니, 이러한 의식은 상당한 역사와 상당한 문화가 있는 종족에게는 피하지 못할 사실인가 하노라. 그러므로 내지연장주의는 그 자체는 매우 환호할 바이나, 이것을 실현하는 구체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숙고할 바요, 만약 여전히 전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동화책으로 이를 실현코자 하면, 이는 시대정신을 무시함이니, 최선의 정책이라 말하지 못하리로다.

일한병합은 세계의 대세와 일한양국의 국정에 의하여 결행된 바이나, 정신적으로는 인류가 발전을 계획하고자 하는 자연적 요구에 의하여 결행된 바라 하리로다. 인류가 자연계에서 현재의 발달을 수행하고, 현재의 지위를 점령하기에 이른 것은 서로 다른 종족이 혼합결교하여 각자의 특질에 연마절차(鍊磨切磋)를 가하여 상대방이 상화상방(相化相倣)하여 생활을 개량하며, 문화를 증진함에 연유한바, 이는 인류학상, 역사상으로 실증하는 바라. 일본 민족이 현재의 발전과 융성을 보기에 이른 원인은 건국 이래로 다른 종족과의 혼합결교가 빈번하고 원만히 행한 바에 의함이니, 즉 상고신대(上古神代)에 팔백만 신(神)이 고천원(高天原)에 모여 국사를 논하였다는 사화는 일본의 건국이 다수 다른 종족의 집합에 의하여 형성된 바와 국가의 장래 발전책이 다른 종족의 혼합결교에 있음을 의미함이 아닐까. 야마토민족의 이 정신은 중고(中古)에 이르러 서(西)로는 태습(態襲)과 합덕(合德)하며, 동(東)으로는 하이(遐夷)<sup>76)</sup>와 합하여 혼연화합으로 일방대민족(一邦大民族)을 작성하여 이 사이에 하등 차별과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기내(畿內)의 지략과 서해(西海)의 정한(精悍)<sup>77)</sup>과 동북의 질박(質朴)이 상호상보(相助相補)하여 신국민성을 창성하여서 금일의 일본을 이루게 하였다. 우리 조선에도 상고(上古)에 기자(箕子)가 무리를 이끌고 온 황하(黃河)민족의 혼입에 의하여 문화의 근원이 발생함을 처음으로, 진족(秦族)의 유입을 받아서는 신라문명을 창작하였으며, 중고(中古)에 이르러는 몽고족과 서로 합하여 고려 문화를 발생시키며, 북으로 여진족을 합하여 이조 오백년의 기초를 축성하였나니,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이 다른 종족의 혼합결교에 의하여 얻은 효과가 이와 같은지.라 지금 이 양 민족이 결합함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장래의 발전을 기대할 자연의 경로를 밟는 것에 불과함이라. 그러므로 이 정신으로 양자의 문화의 우열과 빈부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의 특이한 형식으로 양자의 결합을 행하였나니, 이 사이에 어찌 정복과 피정복의 추악한 의식이 존재하며, 지배와 복종의 가기(可忌)할 욕망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리오. 무차무별, 혼연일가로 나아가는 공존공영의 하나의 길이

76)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랑캐를 뜻함.

77) 날쌔고 용감함을 뜻함.

있을 뿐이로다. 그러므로 내지연장주의, 즉 일면으로 말하면 조선연장주의는 그 이상을 실현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침이겠으며, 그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에는 일방의 의사 또는 주동적으로 타방에게 굴종 또는 수동의 동화를 강요함은 그 본 취지에 위반되는 바이니, 양자는 마땅히 합의 또는 대등한 접촉을 행하여서 동화가 아닌 양자의 혼화(渾化)를 계도함이 최고의 정책일까 하노라.

사유컨대 일본 민족에 고유한 역사가 있으며, 특이한 문화가 있으며, 특수한 민족성이 있는 동시에는 조선 민족에도 조선 민족의 상당한 역사와 문화와 민족성이 있으니, 야마토민족이 가진 여러 점이 전부 우수치 못함도 사실이요, 조선 민족이 가진 여러 점이 모두 열악(劣惡)치 아니함도 사실이라. 상대방의 좋은 점이 많다 할지나 나쁜 점이 없는 바가 아니요, 이에 단점이 많다 할지나 장점이 없지 않으니, 양자는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고 보완하여 취할 바는 취하며, 없앨 바는 없앨 것이요, 결코 자기의 재래에 있는 바에 얽매이지 않고 가진 바가 총유(總有)<sup>78)</sup>로서 약자가 가진 것의 전부를 지배하고자 하며, 배제하고자 하지 말지로다. 다른 종족의 문화를 수입한 경험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저작(咀嚼)<sup>79)</sup>할 소지가 있음이 명료한 이상에는 가치가 있으며, 필요가 있으면 자연히 수입하며 저작할 터이니, 갑작스런 강요와 무리한 수단을 사용치 말라. 또한 다른 종족과 혼화결교(混和結交)한 경험이 있으며 또 이에 의하여 이로운 것이 있음이 확연한 이상에는 양보할 바는 양보하며 취할 바는 취할 것이니, 편협한 행동과 창피한 감정을 발생치 말지로다. 한편에 우자된 자만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는 약자 된 비애가 있으니, 자만이 있으면 교태가 쉽게 생기며 비애가 있으면 벽견(僻見)이 쉽게 생길지라. 모멸치 말며, 친애할지라. 시기치 말며, 신뢰할지로다. 조선 민족은 장래의 광명과 인류의 행복을 기대하기 위하여 귀중한 국토와 가장 사랑하는 국가를 기꺼이 바쳤으며, 일본 민족은 또 이를 위하여 국운을 건 일척, 일러의 양 전역(戰役)을 감행하였나니, 진로를 신중히 하여 경솔하게 자포(自暴)하지 말 것이요, 수습을 원만히 하여 무리하게 강요치 말지로다. 일방이 약자 된 비애와 벽견으로 자포자기하고 의심하여 본래의 이상을 몰각하며, 장래의 진로를 암흑케 함도 탄식할 바이나, 또 일방이 우자의 꿈에 취하며, 성공의 자만에 미쳐 교오경모(驕傲輕侮)<sup>80)</sup>함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로다.

야마토민족이여, 그대들은 일찍이 조선을 위하여 수십 억의 국고와 수만의 생명의 희생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에 이르러 이에 식민지라는 명사(名詞)를 씌우고, 토

78)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뜻함.

79)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다는 뜻으로, 다른 문화를 흡수하여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80) 교만하거나 건방지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함을 뜻함.



인(土人)의 칭호를 붙여 그 신뢰하고자 하는 성의를 박약하게 하며, 그 진취하려 하는 기상을 쇠미하게 하는 감이 있음은 어찌된 연유인가, 건망(健忘)의 성질이 많음이 원인인가, 수성(守成)의 재능이 없음에 연유함인가. 조선 민족이여, 우리 각각은 약자라 어떠한 보수에도 만족하며, 어떠한 취급이라도 감수하리라 할지나, 일본의 사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금일의 일본제국의 사명인바, 동(東)으로는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며, 북(北)으로는 적로(赤露)의 잠식(蠶食)을 막아내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며, 유색인종의 단결과 발전을 계도(計圖)하여 동점(東漸)을 멈추지 않는 백화(白禍<sup>81</sup>)를 격퇴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결코 덕천시대(德川時代)<sup>82</sup>의 해도적 일본에 만족하며, 왜관적(倭冠的) 발전에 만족할 바가 아니라. 대륙적 국가, 동양적 국가, 세계적 국가를 건설함에 분투치 아니치 못할 것이요, 대륙적 국민성, 동양적 국민성, 세계적 국민성을 창작함에 노력치 아니치 못할지니, 1만 4천 방리의 토지는 가히 합하여서 대륙적 국가를 건설할 만하다. 1천 7백만 명의 민중은 가히 혼합하여서 대륙적 국가와 민족성을 창조함에 족하지 아니 할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성공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혼화되는 것도 필요하리니, 동화를 강요함은 곤란하고도 효과는 적을 것이요, 혼화를 행함은 용이하고도 효과는 많다 하리로다. 하물며 양 민족에 병합한 목적과 정신은 양 민족을 혼화하고 순화하여서 동근 환(丸)을 한번 두드려 완성하여 신국가를 창설하며, 신국민성을 양성하여 그 생활의 충실과 향상을 계도하며, 나아가 동양 전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기대하고자 함에 있음이요, 결코 일부가 비난의 구실이 될 일민족의 야심에 만족하며, 일민족의 우열감의 기쁨을 탐하는 추악한 환망(歡望)과 자기할 정신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한 바이리오. 조선 통치방침은 내지연장주의로써 매진함이 옳을 터요, 내지연장주의는 시대정신에 역행되는 동화보다 인류가 당연히 실행할 혼화로서 이의 실현을 기대함이 최고의 방책이라 하노라.

이상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본 조선의 현상에 대하여 이를 진술하는 동시에 약간의 소회를 첨부함에 불과하나니, 이하 다음 호부터 조선 통치상에 현한 제반제도와 시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노라.

〈이상 (2)〉

81) 서양세력이 점차 동쪽으로 진출하는 위기를 뜻함.

82) 일본의 전국통일을 이루고 막부체제를 확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집권한 이후 일본 근세시기를 일컫음.

### 제3장 행정 방면(상)

#### 1. 정치의 근본조직

현하 우리 조선은 어떠한 정치하에 있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 우리는 조선 통치의 형식이 무단(武斷)이며, 문화임을 막론하고 그 정치의 근본조직에 일대 결점이 있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나니, 즉 입헌국가하에 전제정치가 시행되는 바가 그것이라. 우리 조선에 헌법의 시행여부는 천언만어의 의론보다는 1907년 7월 12일부로 가쓰라(桂) 수상이 데라우치(寺內) 총독에게 통첩한 ‘한국병합 이상(以上)에는 제국헌법은 여기 신 영토에 시행됨으로 해석함’이라는 명문에 의하여 확연히 결정된 바이거늘 지금까지 헌법과는 거의 물교섭의 처지에 방치되었나니, 어찌 기괴한 일이 아니리오. 우리 조선 재주(在住) 2천만 동포에게는 입헌국민의 가장 귀중하고 유일특권인 참정권(제국의회에 참여하는 권리)이 있지 못하였나니, 헌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효력이 있으며, 어떤 은전(恩典)이 있다 하리오. 우리는 실로 입헌치하 국민의 미명하에 전제정치의 질곡을 감수하는 바라. 그 어리석음이야 가소로울 바요, 그 부끄러움이야 가통(可痛)할 바로다. 이로 인하여 조선 통치상에는 수많은 장애가 발생하며, 일반 민중의 심리에는 수많은 괴리(乖離)를 이루게 하나니, 즉 정치는 그 내용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입각지에 조선과 일본의 차별이 발생하며, 민중은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그 근본 정신에 국민 된 자각을 확립키 어려울 것이라. 위정자의 반성을 구할 바가 아니며, 유식자(有識者)의 꺾기를 요할 바가 아니라. 위정자가 일시동인을 어느 정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조선참정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국 선전에 그치며 성명에 불과하다 말하지 아니치 못하리니, 선전과 성명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다 하겠는가. 다만 기대하던 바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실망과 불평이 증가할 뿐이로다. 우리 조선재주동포가 어느 정도 그 권리를 신장하며 복리를 획득한다 할지라도 조선참정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전히 비문명적 생활에 기거하여 국민 된 자격을 갖지 못한 일종의 노예적 경우에 준동(蠢動)할 뿐이니, 이에 어떤 행복이 있으며, 어떤 쾌락이 있겠는가. 다만 국민 중의 낙오자 된 수치와 모욕을 감수할 뿐이로다. 어찌 위정자의 시급한 각성을 구하며, 유식자의 맹렬한 꺾기를 요할 문제가 아니리오. 위정자는 백만 선정(善政)을 계도하기 전에 우선 이 문제의 해결에 용감해야 할 것이며, 일반 동포는 천만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제일착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국가백년의 대계요, 조선 통치의 근본문제일 뿐 아니라, 목하 시국에 대한 최선최급을 요하는 중대

문제라 하노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본지 창간호에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제목하에 상세하게 논술한 바가 있으므로 지금 또 다시 중복 설명함은 피하고, 다만 몇 마디로 위정당국자와 일반 동포의 각성을 재촉함에 그치고자 하노라.

## 2. 총독부관제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에 일한병합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나, 당시는 과도 초창기이므로 예로부터 통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하며, 또 구한국정부에 속하였던 제 관서를 내각급 표훈원을 제외하고 전부 총독부 소속관서로 간주하여 정무를 집행케 하였을 뿐이요, 사실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칙령 제354호에 의하여 그 조직이 완전히 성립된 바라. 그 후 제반정무가 대략 실마리를 잡아가며, 민도가 점차 진보됨을 따라 1915년 4월에 관제의 일부를 개정하여 각부 장관하에 있던 각국을 학무국을 제외하고 전부 폐지하고, 각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각과 사무를 지휘하게 하는 등 일반 행정기관에 적지 않은 정리를 행하였으며, 때때로 전개되는 세계의 진운과 민도의 향상은 그 근본 개혁을 계속 촉진하므로 1919년 8월에 대조환발(大詔煥發)<sup>83)</sup>에 의하여 현행관제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의 주요점은 총독임용의 범위를 확장하여 재래에 육해군 대장에 한하여 조선총독에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 구관제 중 ‘총독은 천황에 직례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함’의 조항을 ‘총독은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될 시에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 사령관에게 병력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였으며, 재래의 내무부, 도지부, 농상공부, 사법부를 내무, 재무, 식산, 법무의 사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내무부에 부속하였던 학무국을 총독의 직할국으로 변경하여 전기 4국과 대등의 지위에 세우게 하며, 재래 독립관청이던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본부에 경무국을 설치하여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변경한 것 등 제 항(項)이니, 이는 요컨대 왕왕(往往) 무단정치의 비방을 받던 재래의 조직을 문화정치, 민중정치로 개조하여 병합의 목적을 관철하며,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취지를 철저히 하고자 함이라. 그 정신의 발로로 태형폐지,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의 차별대우를 철폐하였으며 집회결사와 언론기관에 대한 단속 범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조선 통치의 일대 개량, 진보라 말하리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소의 불만이 없는 바가 아니며, 수많은 의문이 있으니, 즉 육해군 대장에 한하였던 조선총독의 임용범위를 문무병용의 제도로 개정함은 시세에 순응한 당연의 귀결이라 가슴 가득히 찬

83) 황제의 조칙(詔勅)을 세상에 널리 선포함.

양을 아끼지 않는 바이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은 천황에 직속하여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함’의 조항을 삭제하여 총독의 지위를 내각에 직속하게 한 바는 정치조직에 일대 진보를 노정한 바라 어찌 이의가 있겠나만은 솔직한 우리의 실감을 고백하면, 반대로 조선 통치상에 수많은 불편불리(不便不利)를 초래하는 결과에 빠질 염려가 발생하였다 말하는도다. 우리는 물론 현재 조선총독의 지위와 조선 내의 정무를 집행하며, 안녕을 유지함에 불만부족함으로 사유하는 바는 아니나, 조선 통치의 당국자로 하여금 그 정책을 완전히 수행하며, 그 수완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하고자 하려면, 중앙정계의 철저한 양해와 원조를 기대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중앙정계에 상당한 권위와 명망이 있지 아니치 못할 것이요, 더욱이 중앙정계의 일반인사가 왕왕 내지의 정국에만 몰두하여 조선 문제를 비교적 냉안시(冷眼視)<sup>84)</sup>하는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는 일층 그 필요를 느끼기 심하니, 근 1, 2천만 원의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매년 총독, 총감 양인이 도쿄로 가서 동분서주의 알선에 골몰함이 저간의 소식을 가장 잘 응변하는 바로다. 현 사이토(齋藤) 총독은 중앙정계의 선배로 그 인격과 명망이 정계 인사들을 매우 압도하는 자라. 결코 중앙정계의 견제에 의하여 그 정책 수행상 부자유를 느끼는 바가 만무하다 할지나, 만약 미래에 조선 총독 된 자로 그 정치적 기반과 인격적 명망이 중앙정계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점령치 못할 때에는 조선사정에 소원(疎遠)한 중앙당국자의 지휘간섭을 영합함에 몰두하여 자연히 조선 통치상 수많은 장애와 불편을 느끼는 바가 없지 아니치 못하리니, 이것이 어찌 조선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리오. 보아라, 정치의 근본계획을 제정하는 의회에서 조선총독은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 다만, 일개 정부위원으로 각 국 과장과 동렬취석(同列就席)하여 무명의원(無名議員)의 우문태론(愚問駟論)<sup>85)</sup>의 응답 변해(辨解)<sup>86)</sup>에 급급할 뿐이나니, 적어도 수천 년간 일국을 형성하였던 2천만 민중과 삼천리강토를 수목(守牧)하는 조선총독으로는 그 지위와 대우가 너무 박약하다 말하지 아니치 못하리로다. 원래 일한병합은 한국 황제폐하께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폐하에게 양여하심에 의하여 결행된 바라. 병합 후 조선을 일본에 편입하여 군현제를 실시하지 않고 특별히 조선총독을 설치함은 천황폐하께서 그 양여받으신 바 조선 통치권을 총독으로 하여 대리 행사케 하신 바이니 조선 총독 된 자의 임무가 중하며, 그 지위가 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총독자신은 폐하에게 직례(直隸)하여 받은바 중임을 완전 행사함이

84) 남을 무시하는 차가운 눈초리로 봄. 업신여김을 뜻함.

85) 어리석은 물음과 시시한 말들을 뜻함.

86) 말로 풀어서 밝힘을 뜻함.